정책자료 2013-180

한중FTA 협상준비를 위한 HS코드의 연계 및 관세율 DB 구축

이진면 · 김바우 · 이용호 · 김재진

2013. 7.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차 례

제1장 서론 ……7

1. 연구배경 ……7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8

제2장 무역통계와 품목분류의 국제기준 ……10

1. 무역통계의 정의와 주요 작성기준 ……10
2. 무역품목분류의 발전 ……21
3. HS분류의 구조와 품목구성의 변천 ……29

제3장 한국과 중국의 HS 현황과 세분화 비교 ……35

1. 한국 HS분류의 제정과 개정 ……35
2. 중국 HS분류의 제정과 개정 ……45
3. 한국과 중국의 HS 세분화 정도 비교 ……54

제4장 한국과 중국의 관세 현황 ……61

1. 한국의 관세 현황 ……61
2. 중국의 관세 현황 ……72
3.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관세율 비교 ……85

제5장 결론 ……91

참고문헌 ……94

표 차례

〈표 2-1〉 세계관세기구(WCO)의 물량표준단위 ……21
〈표 2-2〉 HS분류의 해석에 관한 통칙(GRI) 구성 ……31
〈표 2-3〉 HS 품목(코드)구성의 변천 ……32
〈표 2-4〉 HS 개정판별 6단위 기준의 대응관계 ……33
〈표 3-1〉 한국 HS분류의 개정 연혁 및 주요 내용 ……36
〈표 3-2〉 부류별(HS-code) 한국 품목분류 코드수 변화 추이 ……41
〈표 3-3〉 부류별(HS-code) 중국 품목분류 코드수 변화 추이 ……50
〈표 3-4〉 한·중 간 HS 품목분류 코드수 비중 변화 추이 ……57
〈표 4-1〉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관세법 50조) ……63
〈표 4-2〉 2010년 대중국 수입 기본관세율 및 WTO 일반협정관세율(부류별) …65
〈표 4-3〉 2010년 대중국 수입규모 및 실질관세율(부·류별) ……66
〈표 4-4〉 2011년 대중국 수입 기본관세율 및 WTO 일반협정관세율(부·류별)…68
〈표 4-5〉 2011년 대중국 수입규모 및 실질관세율(부·류별) ……69
〈표 4-6〉 2012년 대중국 수입 기본관세율 및 WTO 일반협정관세율(부·류별)…70
〈표 4-7〉 2012년 대중국 수입규모 및 실질관세율(부·류별) ……71
〈표 4-8〉 2010년 대한국 수입규모 및 실질관세율(부·류별) ……74
〈표 4-9〉 2011년 대한국 수입규모 및 실질관세율(부·류별) ……76
〈표 4-10〉 2012년 대한국 수입규모 및 실질관세율(부·류별) ……77
〈표 4-11〉 중국의 FTA 체결 및 협상 현황 ……78
〈표 4-12〉 2010년 부·류별 중국의 주요 관세율 ……80
〈표 4-13〉 2011년 부·류별 중국의 주요 관세율 ……82
〈표 4-14〉 2012년 부·류별 중국의 주요 관세율 ……84
〈표 4-15〉 2010년 한·중 간 산업별 관세율 비교 ……86
〈표 4-16〉 2011년 한·중 간 산업별 관세율 비교 ……87
〈표 4-17〉 2012년 한·중 간 산업별 관세율 비교 ……89

그림 차례

〈그림 2-1〉 일반무역시스템의 통계영역 ……13
〈그림 2-2〉 특별무역시스템의 통계영역 ……13
〈그림 2-3〉 무역품목분류체계의 발전과정 ……28
〈그림 2-4〉 HS분류체계의 계층적 구조……31
〈그림 3-1〉 한국 HS분류의 부(Section)별 비중 변화 ……37
〈그림 3-2〉 중국 HS분류의 부(Section)별 비중 변화 ……47
〈그림 3-3〉 2012년 한·중 HS 부(Section)별 비중 비교 ……55
〈그림 4-1〉 2012년 한·중 간 산업별 관세율(가중평균) 비교 ……88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 2012년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FTA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정책당국의 협상준비를 위한 한·중 간 무역 관련 계량적 정보 및 분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본원에서는 정책당국의 요청으로 2010년 후반기부터 2차에 걸친 '한중FTA 심층연구'의 수행을 통해 한·중 간 제조업부문에 있어서 수출입, 관세 등 협상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정비, 세부 업종별 민감품목의 파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을 수행하여 정책적 수요에 대응

- 2012년 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FTA협상이 현실화되면서 정책당국은 협상실무에 필요한 양국의 기 체결 FTA 관련 세부 내용, 세부 품목별 민감도, 관세양허의 전략적 시

나리오 등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

○ 한편, 국제무역 관련 활동에 표준으로 적용되는 HS품목분류가 2012년을 기점으로 대폭 개편됨에 따라 기존에 정비한 기초통계와 분석결과의 갱신(update)이 필요

- 무역통계의 작성이나 관세부과 등에 국제적 표준인 세계관세기구의 HS품목분류는 통상 5년을 주기로 개편되며, 지난 2012년이 개편연도에 해당함.
- 한국과 중국은 세계관세기구의 제5차 HS협약 개정안에 맞춰 국제공통기준인 HS 6단위와 더불어 한국은 HS 10단위, 중국은 HS 8단위를 개정하여 2012년부터 적용
- 특히, 중국의 무역통계는 HS 8단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관세율은 HS 10단위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갱신이 필요한 실정임.
- 이러한 HS분류의 개편에 따라 양국의 세부 품목별 관세율 및 수출입 통계의 재정비뿐만 아니라, 양국의 기 체결 FTA 관련 양허수준과 기존 연구결과의 갱신 등이 요구됨.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 본 연구는 한중FTA 협상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양국의 개정 HS분류에 입각하여 관세율 및 수출입 통계의 시계열 DB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HS분류의 개정내용에 입각, 분류코드의 시계열 대응표를 작성하고 양국의 수출입, 관세율 등 관련 통계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한중FTA 협상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으로 보고서를 구성

- 본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무역통계의 개념과 무역품목분류의 발전과정을 개괄하고 HS품목분류의 기본구조와 특성을 파악

- 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채용하고 있는 HS품목분류 및 최근의 개정내용을 파악하고, HS분류의 시계열적 대응표를 작성하여 양국 간 품목분류의 체계 및 세분화 정도를 비교·분석

- 4장에서는 양국 간 및 기 체결 FTA의 수출입통계 및 관세율을 DB화하고, 이를 산업분류와 연계하여 양국 간 산업별 관세율 변화를 비교·분석

- 마지막 5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 등을 도출

제2장
무역통계와 품목분류의 국제기준

1. 무역통계의 정의와 주요 작성기준[1)]

○ 무역활동 관련 현황 파악, 국제 간 비교 등을 위해서는 무역통계와 품목분류의 국제적 표준화가 매우 중요

- 무역활동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무역통계의 작성이 필수적임.
- 더욱이 무역규모의 국가별 통계 비교나 무역상품의 통관절차와 관세 부과의 편의성 등을 위해서는 품목분류를 포함하여 무역통계의 작성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함.

○ 유엔통계위원회는 1970년부터 가맹국들의 무역통계가 만족해야 할 일련의 요건을 중심으로 무역통계의 개념과 정의를 정리하여 공표하고 있음.

1) UN(2011),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 2010*,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52의 내용을 정리함.

- 유엔통계위원회(UNSC,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는 각종 통계에 대한 개념과 국제기준을 개발하며, 유엔 회원국의 통계를 수집, 정리하는 통계실무를 담당하는 유엔통계국(UNSD,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구임.

- UNSC는 1970년에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이하 IMTS)'의 초판을 공표한 이후 1981년, 1997년, 2010년 세 번에 걸쳐 개정판을 공표

○ 2010년 개정판(이하 IMTS 2010)에서는 무역통계의 개념 및 정의와 관련된 규정을 11개의 장(chapter), 60개의 조항을 통해 기술하고 있음.[2)]

- 1990년대 이후 국제무역의 내용과 성격, 통관절차 관련 법적 환경, 무역통계에 대한 수요 등의 변화를 배경으로 공표된 IMTS 2010은 이전의 개정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신설항목과 수정·보완 규정을 포함

- 무역통계의 범위와 계상시점, 무역상대국의 기록, 품목분류, 무역액의 평가, 거래량의 기록 등을 주요 작성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들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 우선 IMTS 2010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통계의 범위는 "일국의

2) 우리나라의 무역통계는 2010년 10월에 관세청 고시 제2010-120호로 공표된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IMTS 1997년판에 근거한 것임.

물리적 자원의 부존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인 상품무역만을 포함함.

- 소유권의 이전 없이 국내로 반입 혹은 국외로 반출되는 상품은 무역상품에 포함되지만, 단순 환적 등을 위해 자국을 통과하는 상품거래는 계상하지 않음.
- 거래의 기록시점(time of recording), 즉 무역통계의 계상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품이 물리적으로 일국의 경제영역(economic territory)을 벗어나거나 도착한 시점을 기준함.
- 여기서 경제영역이란 하나의 정부에 의해서 효과적인 경제적 통제(effective economic control)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무역통계의 범위설정에 있어서 '일국'에 대한 정의는 명확해야 하며 모든 국가에서 통일된 개념을 적용해야 함.

- 무역통계는 국가 간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국의 무역데이터를 집계하는 통계영역(statistical territory)에 대한 정의는 모든 나라에서 일치해야 통계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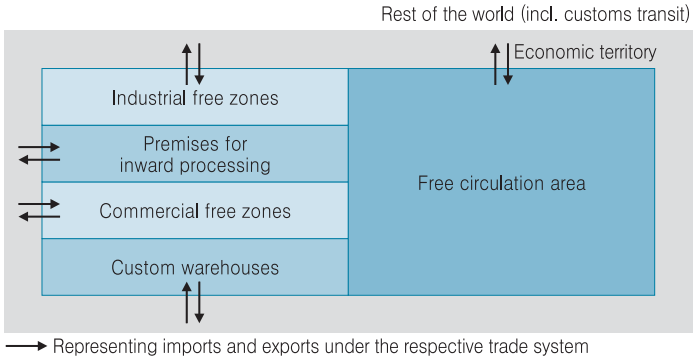
○ IMTS에서는 국가 간 통계영역의 통일 적용을 위해 무역시스템을 일반무역시스템과 특별무역시스템으로 대별

- 일반무역시스템(general trade system)이란 일국의 통계영역과 경제영역이 일치하는 상태이며, 특별무역시스템(special trade system)은 통계영역이 경제영역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함.

- 이러한 무역시스템의 구별은 관세나 세관절차상에서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에 유출입되는 상품의 취급방식에 기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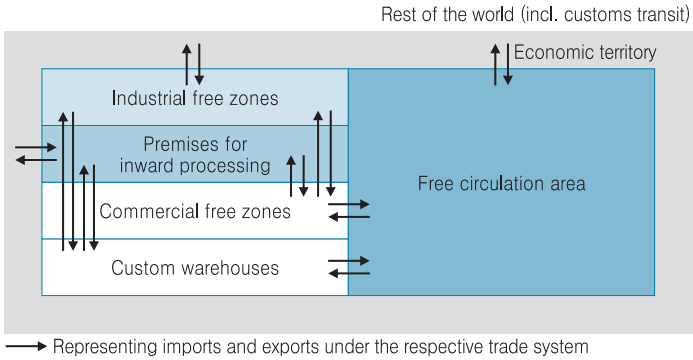
- 일반무역시스템에서는 경제영역 간 직접적으로 유출입되는

〈그림 2-1〉 일반무역시스템의 통계영역



자료 : United Nations(2011),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 2010*, p.29.

〈그림 2-2〉 특별무역시스템의 통계영역



자료 : United Nations(2011),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 2010*, p.30.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나, 특별무역시스템에서는 관세영역 간 거래도 포함함.

○ IMTS 2010에서는 상품무역 중에서도 이러한 일반무역시스템에 입각하여 무역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

-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자국의 경제영역에 자유무역지구, 가공무역지구, 보세지역 등 다양한 관세영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들 간 빈번히 발생하는 상품거래는 원칙적으로 무역통계의 범위에서 제외

- IMTS가 정의하고 있는 관세영역은 특정의 관세조치나 세관절차가 적용되는 개념적인 영역을 의미하며, 반드시 일정한 지리적 범위를 차지할 필요는 없음.

-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기업에 관세 및 세관절차의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특별조치 및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집합을 단일 관세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재수출입이나 가공무역은 경제영역 간 직접적인 무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무역통계의 집계대상임.

- 자국의 경제영역 밖으로 판매한 상품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다시 구입하거나, 반대로 구입한 상품을 다시 판매하는 재수입(re-imports)과 재수출(re-exports)은 무역통계의 집계대상이 됨.

- 외국기업과 계약을 맺고 원료나 중간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가공한 이후 수출하는 거래나 반대의 거래인 가공무역

(processing trade)도 무역통계의 집계대상이 됨.

- 최근에는 국경을 초월한 생산공정의 분업과 다국적 기업의 기업 내 무역이 진전되면서 가공무역이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함에 따라, IMTS 2010에서는 재수출입을 일반수출입과 구분하여 기록하며, 일국 내에 여러 관세영역을 두고 있을 경우 이를 구별하여 무역통계를 작성하도록 권장

○ 무역통계의 범위나 집계대상에서는 무역상대국의 식별방법이 중요한데, IMTS는 일반무역시스템의 개념을 적용하여 수출입의 상대국을 기록하도록 요구

-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하나의 국가에 수출되고 거래가 종료된 단순한 거래는 무역상대국이 분명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가공되거나 제3국을 통해 수출되는 등 수출시점에서 최종목적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무역상대국의 기록에 대한 규칙이 없다면 각국의 무역통계 간 불일치가 발생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IMTS에서는 수출은 "최종적으로 알려진 목적지(country of last known destination)", 수입은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상대국으로 기록하도록 규정

○ 그러나 이러한 IMTS의 무역상대국에 대한 기록방법의 현실적 적용은 쉽지 않으며, 특히 수출상품의 최종목적지에 대한 숙지 정도에 따라 무역대상국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 예를 들면 B국이 원산지가 A국인 상품을 주문하여 C국에 수

출하고, C국은 수입한 상품을 D국에 전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A국이 해당 상품의 최종목적지를 어디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수출대상국이 달라짐.

- 가령 A국의 상품이 B국을 경유하여 C국에 수출된 것으로 A국의 세관에 기록된 경우에는 A국의 수출대상국은 C국이고, B국과 C국의 세관에 해당 상품의 원산지가 A국으로 기록되었다면, A국의 수출상대국은 C국이며, C국의 수입상대국은 A국이 되어 양국의 무역통계에 있어서 상대국이 일치함.
- 그리고 B국과 C국 간 거래는 그 자체로 완결되어 있기 때문에, C국이 D국에 상품을 전매한 것은 원칙적으로 B국의 통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C국의 무역통계에 재수출로 기록됨.
- 한편, B국이 A국에서 구입한 상품을 B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C국에 수출하거나 B국을 세관 절차 없이 단지 통과만 하여 C국에 수출한 경우 해당거래는 원칙적으로 B국의 무역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음.
- 그러나 B국이 A국에 해당 상품이 C국으로 수출된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A국의 수출대상국은 B국이 됨으로써 A국과 C국의 무역상대국은 일치하지 않게 됨.

○ IMTS 2010에서는 여러 나라를 경유하는 복잡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무역상대국의 명확화를 위해 수출입의 상대국뿐만 아니라 위탁지에 대한 기록을 권고하고 있음.

- 위탁지(country of consignment)는 상품을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의 예에서 A국에게는 B국이, C국에게는 B국이 위탁지가 됨.

- 위탁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만일 A국의 수출통계에서 "최종적으로 알려진 목적지"와 위탁지가 모두 B국으로 되어 있어도, C국의 수입통계에서 원산지와 위탁지를 보면 해당 상품이 B국을 거쳐 구입한 것으로 판명되며, A국과 C국의 통계상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음.
- 이에 수입통계에서는 위탁지의 기록을 권고(recommendation)하고, 수출통계에서는 위탁지의 기록을 권장(encouragement)하고 있음.

○ 반면, 수입국의 원산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국가의 원산지 기준에 의존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함.

- 수입국이 원산지를 구분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앞의 예에서 A국이 제3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면서 A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작을 경우, C국은 A국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IMTS는 개정교토의정서[3]의 원산지에 대한 규정(해당 상품의

3)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신인 세계관세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가 1973년 교토총회에서 세관절차의 단순화와 조화를 통한 무역확대를 위하여 소위 교토협약이라 칭하는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를 채택한 이후, WCO가 1999년 총회에서 세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국제규범 및 구속력 강화, 현대의 발달된 정보기술의 반영 등을 위하여 교토협약을 개정한 의정서를 말하며, 한국은 2006년에 이를 채택함(재정경제부(2006.2.3), 개정교토협약의 발표, 보도자료 참조).

본질적 성질에 관한 마지막 실질적인 제조 또는 가공을 한 국가(country in which the last substantial manufacturing or processing, deemed sufficient to give the commodity its essential character))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교토의정서에서는 "실질적인 제조 내지 가공"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각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무역정책과 직결되는 문제로 WCO의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임.

- 국가별로 원산지의 기준이 다를 경우, 각 상품의 유통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수출국과 수입국의 무역통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도 목적지와 원산지 및 위탁지를 동시에 기록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무역통계의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가 개발한 관세분류와 무역통계분류를 통합한 HS분류에 입각함.

- IMTS의 초판과 개정 초판에서는 UNSD가 중심이 되어 개발해 온 제품의 성질이나 가공 정도를 고려한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에 입각하여 무역통계를 집계 및 공표하도록 권고함.

- 그러나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개발한 "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한 통일시스템(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llecting System)"이 SITC에 비해 분류의 세분화, 세관행정에 부합, 빈번한 개정에 의한 현실적

활용성 제고 등으로 이를 이용하는 나라들이 많아짐에 따라 1997년의 IMTS 2차 개정판부터 HS에 입각하도록 규정을 변경함.

- SITC와 HS를 포함한 무역품목분류 관련 국제표준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논의할 것임.

○ 무역액의 평가에서 수출액은 본선인도(FOB) 가격, 수입액은 운임보험료 포함(CIF) 가격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가격은 상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함.

- 운임보험료 포함(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모든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임.

- 이러한 기준은 국가 간 경제문제 심의나 상업적 분쟁을 중재하는 민간경제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정하고 있는 무역조건(INCOTERMS)[4]에 입각한 것임.

4)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은 ICC가 제정한 교역조건(trade terms)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수출입 당사자의 상관습이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조건의 오차나 분쟁·소송을 방지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상품인도의 장소, 위험부담의 분기점인 위험이전,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판매자와 매입자 각각의 의무를 정한 것임(이에 관한 상세내용은 오세창·조현정(2011), 「인코텀즈 2010의 해설」, 두남. 참조).

- FOB는 기본적으로 해상운송을 염두에 둔 무역조건이지만, 다른 운송형태의 유사한 조건으로 운송인인도(FCA, Free Carrier), 국경인도(DAF, Delivered at Frontier) 등이 있음.

○ IMTS 2010에서는 새롭게 FOB 기준의 수입액 기록이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추가운임 및 보험료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표할 것을 권장함.

- 수입액의 FOB 기준 평가에 대한 요구는 FOB 기준으로 수출입통계를 집계하는 국제수지표(Balance of Payments)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에 있어서 집계의 용이성, 무역통계 간 비교성 제고, 상대국 상품의 국제 물류비용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됨.

○ 무역 거래량(quantity)의 기록방법과 관련해서는 WCO가 추천하고 있는 HS품목별 표준단위에 입각할 것을 권고함.

- 거래량의 기록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품목별 단가(unit value)의 계산 및 단가지수와 수량지수의 산출에 이용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함.

- WCO는 HS 6단위 품목수준에서 바람직한 물량단위로 중량(weight), 길이(length), 면적(area), 부피(volume), 전력(electrical power), 수량(Number) 중 하나를 추천하고 있음.

- IMTS의 2차 개정판에서는 HS분류의 사용과 더불어 WCO가 추천하는 물량단위로 기록하며, kg(kilogram)단위 이외의 단위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순중량(net weight)도 기록하

〈표 2-1〉 세계관세기구(WCO)의 물량표준단위

물량유형	표준단위
중량(weight)	kilograms(*kg*), carat(*carat*)
길이(length)	metres(*m*)
면적(area)	quare metres(m^2)
부피(volume)	cubic metres(m^3), litres(*l*)
전력(electrical power)	1,000 kilowatt-hours(1,000*kWh*)
수량(Number)	pieces/items(u), pairs(2u), dozens(12u), thousands of pieces/items(1,000u), packs(u(set/pack))

자료 : United Nations(2011),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 2010*, p.45에서 인용.

도록 규정함.

- IMTS 2010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 각국이 HS 6단위 이하의 하위 품목분류를 설정할 경우에도 상위분류의 물량단위와 동일한 단위의 사용을 요구

- 한편 부득이한 이유로 상·하위 물량단위의 통일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추계하고 그 방법론을 공개할 것을 권고

2. 무역품목분류의 발전

○ 무역품목분류의 국제적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은 19세기 중반부터 인식되기 시작되었으나, 1913년 브뤼셀의 제2차 무역통계 국제회의에서 최초로 국제협약에 의한 품목분류표가 채택된 것으로 보고됨.[5)]

- 19세기 들어 구미를 중심으로 무역이 급증함에 따라 통계 비교를 위한 세관품목분류표(custom nomenclature), 통계분류(statistical classification), 무역액의 평가, 원산지와 도착지 등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 1853년 브뤼셀의 제1차 국제통계회의(the first International Statistics Congress)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의 수집을 위한 품목분류와 세관절차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6)]
- 특히, 1910년과 1913년 브뤼셀에서 두 차례에 걸친 무역통계 국제회의(the Conférence internationale de Statistique douaniére)를 통해 공통품목분류(common nomenclature grouping)에 입각한 국제상업통계의 수집을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
- 이러한 브뤼셀 국제협약에 의한 품목분류표는 세계 1차 대전(1914-1918)으로 인해 실 활용이 지연되어 1925년에서야 1922년을 대상으로 한 국제상업통계에 처음으로 적용

5) 1930년대까지의 논의는 William R. Leonard(1953),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ed. R. G. D. Allen and J. Edward Ely, New York: Wiley, pp.239-263을 참조함.

6) 1853년 브뤼셀의 제1차 국제통계회의 이후, 주요 국제논의는 관세의 설명과 공식통계에 있어서 비교 가능한 분류와 통일품목표의 채택이 제기된 1889년 파리의 국제무역과 공업회의(the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ial Congress), 통계수집의 일관성을 위해 일정 수의 영역을 커버하는 통일품목표의 필요성이 제기된 1900년 파리의 세관규칙국제회의(Congrés international de la réglementation douaniére), 관세품목분류의 통일성을 요구하는 권고가 이슈화된 1906년 밀라노의 제2차 상업회의소 및 상공업협회의 국제회의(the second International Congress of Chambers of Commerce and Commercial and Industrial Association) 등이 대표적임.

○ 1920년대 중반에는 관세분류의 표준화가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로 1931년 무역품목분류의 모체로 불리는 소위 제네바품목분류표가 탄생

- 국제연맹은 1927년 세계경제협의회(the World Economic Conference)에서 관세의 적용 및 수집의 편의, 무역통계의 개선 등을 위한 '체계적 관세품목분류표(a systematic Customs nomenclature)'의 형식을 국제연맹이사회(the Council of the League of Nations)에 추천
- 이후 국제연맹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된 관세품목분류의 개발을 추진한 결과, 1931년 관세품목분류표의 초안으로 제네바품목분류표(Geneva nomenclature)를 작성

○ 제네바품목분류표의 개발 이후 무역품목분류의 표준화는 세관절차와 관세부과의 통일화 및 간소화 등의 관세 측면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무역통계의 작성을 위한 통계 측면으로 양분되어 발전

- 국제무역의 증가로 복잡해지는 세관절차와 국가별 상이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 관련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관세품목표의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 경주
- 반면, 유엔통계 관련 기구는 무역활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국가별 무역통계의 비교를 위해 무역통계 작성의 표준화에 치중

○ 관세 측면에서는 초기 유럽국가의 동맹결성 및 국제기구를 설

립하는 과정에서 관세제도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일환으로 관세품목분류표의 표준화를 추진

-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표준화에 대한 노력은 1923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서 작성된 "관세절차의 간소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the Simplification of Customs Formalities)을 통해 실질적인 최초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세계 2차 대전으로 관련 활동이 지속되지 못함.

- 이후 1947년 유럽관세동맹의 창립검토를 위해 설립된 유럽관세동맹연구단(European Customs Union Study Group)[7]은 가맹국 관세제도의 조화와 통일을 위해 1950년 브뤼셀에서 "관세협력이사회를 설립하는 조약(Convention Establishing a 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에 있어서 품목분류를 위한 품목표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Nomencla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oms)" 및 "관세를 위한 품목평가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을 작성

- 특히 품목분류와 관련된 조약에는 제네바관세품목분류표에 기초하여 새로운 관세율표를 부록으로 첨부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브뤼셀관세품목표(BTN, Brussel's Tariff Nomenclature)로 불

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경제의 부흥을 위한 미국의 유럽원조계획을 옹호하기 위해 1947년에 발족한 유럽경제협력위원회(CEEC, Committee of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의 16개국 중 13개국이 1947년 유럽관세동맹의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조직으로 관세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의 모체이며, CEEC는 1948년 현재의 경제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전신인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로 전환됨.

리고 있음.

○ 1952년 관세협력이사회가 정식 발족하면서 주된 활동의 하나로 관세품목분류표의 지속적인 갱신을 추진하여 국제적 표준화를 도모

- 관세협력이사회(CCC, 현재 WCO)는 품목분류표 관련 조약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을 가늠하고, 물품의 분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조언을 행하는 품목분류표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품목에 관한 검토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개정 작업을 실시

- 즉, 1950년에 개발된 BTN은 1955년 1차 개정을 통해 국제협약으로 발효되었고, 1960년 2차 개정 및 3차 개정, 1961년 4차 개정, 1970년 5차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1980년대까지 국제적 표준으로 활용

- 1976년 BTN이 EC(European Community)의 공통관세율표로 인식되는 오해를 없애고, 국제적인 공용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관세협력이사회상품분류표(CCCN,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로 개칭

○ 1970년대에 들어 CCC는 새롭게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다목적의 종합적인 품목분류체계의 개발을 추진하여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제통일품목분류체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국제협약으로 발효시킴.

- 1970년대 초까지도 국제무역의 양과 빈도가 급증하였지만, 관세, 수출입통계, 운수, 보험 등의 분야에서는 각기 다른 품목분류체계를 사용함에 따라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상황이 지속됨.
- 이러한 개별적, 목적별로 상이한 품목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하여 CCC는 1971년 총회에서 국제무역에 다목적으로 사용가능한 HS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의결하고, 1973년 개발에 착수함.
- 1983년 CCC총회에서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다목적의 종합적인 통일품목분류체계인 HS가 국제협약으로 채택되고 1988년부터 발효됨.
- 이러한 HS는 국제협약으로 발효 이후 현재까지 5년을 주기로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다섯 번의 정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짐.

○ 한편, 통계적 측면에서는 경제분석 및 무역통계의 국제비교에 용이하도록 제품의 성질이나 가공 정도를 고려한 SITC의 개발 및 개정을 중심으로 품목분류가 이루어짐.

- 1930년대 각국 무역통계의 상호비교를 위해 공통적 상품분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UNSD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통계전문가위원회(The Committee of Statistical Experts of the League of Nations)가 1937년에 "무역통계를 위한 최소상품표(Minimum List of Commodities for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를 공표함.

- 이후 무역통계를 더욱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는 품목분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UNSD는 각국 정부와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1950년에 SITC 초판을 개발하여 공식분류로 채택하였고, 1960년, 1975년, 1985년, 2006년에 걸쳐 네 차례의 개정판을 공표함.

○ SITC분류의 개정은 상품의 성질과 사용소재, 가공단계, 유통과용도, 세계무역에서 중요성,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였고, 특히 통계분류와 관세분류의 조화를 위해 완전히 상호 대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1960년 1차 개정판은 1955년에 국제협약으로 발효된 BTN과 SITC 초판의 장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자를 조화시킨 것임.

- 1975년 2차 개정에서는 SITC와 CCCN(BTN 5차 개정)의 완전한 정합적 대응관계를 위해 UNSD와 당시 BTN을 개발한 CCC의 공동작업을 통해 최종안을 검토하여 가능한 CCCN의 규정이나 해석이 SITC 개정판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함.

- 1985년 3차 개정에서는 CCCN과 대응관계의 유지 및 1973년 CCC총회에서 이행이 승인된 HS와 조화를 이루도록 분류의 상세화를 위해 노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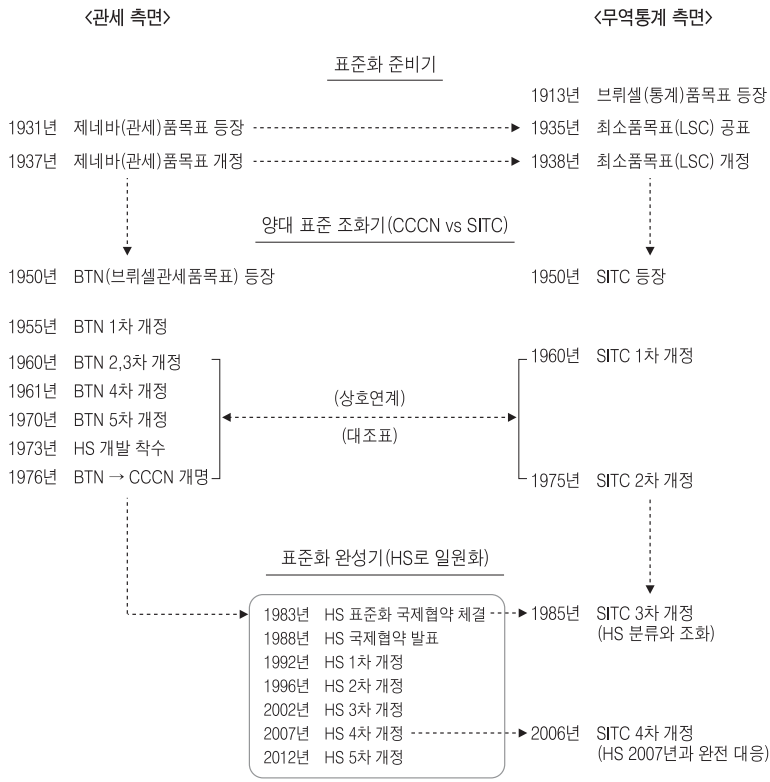
- 2006년 4차 개정에서도 SITC의 근간은 유지하지만, HS와 완전한 대응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HS 2007 개정판을 기준으로 수정·보완함.

○ 상기와 같은 HS로 무역품목분류의 일원화는 무역활동 전반에

품목분류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공통기반을 제공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HS는 관세율 책정과 무역통계 작성의 공통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 정부세수, 국제 간 통상협상, 국제적 운송·보험 관련 비용 설정, 무역금지·제한 품목의 모니터링, 기타 세관행정 관련 활동 등에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2-3〉 무역품목분류체계의 발전과정



자료 : 본 연구의 내용을 도표로 재구성.

3. HS분류의 구조와 품목구성의 변천

○ 국제통일품목분류체계(HS)는 관세협력이사회(CCC)가 국제무역 관련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국제 간 거래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일하는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한 품목분류체계임.

- HS는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의 약자로 조화체계(Harmonized System)라고도 함.

- HS 협약은 국제무역의 원활화, 무역통계의 용이한 수집·비교·분석, 과학기술의 발전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품목표의 갱신, 상업적 활용 등의 목적을 위해 품목분류체계를 제공함.

○ 협약국은 자국의 관세율과 수출입통계의 품목분류를 HS에 일치시켜야 하고, 또한 HS에 따라 무역통계를 공표할 의무가 있음.

- 2012년 현재 세계 200개국 이상 국가들의 관세나 무역통계 작성에 이용되고, 무역액 기준으로는 전 세계 상품무역액의 98% 이상에 적용되고 있음.[8)]

○ HS는 '부(Section, 대분류) → 류(Chapter, 중분류) → 호(Heading) → 소호(Sub-heading)' 순의 계층적 분류체계, 해석원칙인 통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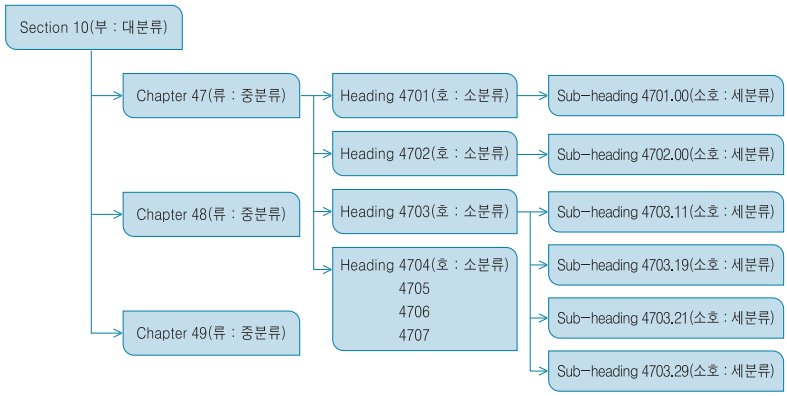
8) 세계관세기구의 HS 관련 사이트(http://www.wcoomd.org/en/topics/nomenclature/overview/what-is-the-harmonized-system.aspx) 참조.

(GRI), 용어 및 물품의 범위 등을 규정한 주(Notes)로 구성됨.

- 부(Section)는 참조의 편의상 '농산품 → 공산품 → 기술가공품'의 산업별 혹은 생산단계별로 제1부-제21부로 분류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 류(Chapter)도 참조의 편의상 원료에서 시작하여 가공품의 순으로 제1류-제97류[9]로 분류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 호(Heading)는 2단위인 '류'를 품목에 따라 세분한 것으로 HS코드 앞부분 4자리를 말하며, 이와 연결하여 설정된 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짐.
- 소호(Sub-heading)는 4단위인 "호"를 품목에 따라 세분한 HS코드 앞부분 5,6자리를 말하며, 소호의 용어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
- HS코드는 소호(6자리)까지 국제적인 공통 기준이며, 7단위부터는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통계 등의 목적으로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통칙(GRI,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은 HS의 품목분류에 대한 통일되고 체계적인 해석을 위한 일반 분류원칙(6개)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짐.
- 주(Notes)는 품목분류표상 용어의 정의, 물품의 정확한 범위·한계와 분류지침에 대한 규정으로 부(부주), 류(류주),

9) 제77류는 미래의 사용을 위해 유보, 제98류와 제99류는 개별국의 사용을 위해 유보해 두고 있음.

〈그림 2-4〉 HS분류체계의 계층적 구조



자료 : www.usaid.gov, "CUSTOMS TARIFF NOMENCLATURE CLASSIFICATION"의 예시를 근거로 재구성.

〈표 2-2〉 HS분류의 해석에 관한 통칙(GRI) 구성

적용 순위	통칙명		내 용	비 고
1	통칙 1		① 호(Heading)의 용어에 의한 분류 ② 부(Section)와 류(Chapter)의 주(Note)에 의한 분류	최우선 분류원칙
2	통칙 2	a	① 불완전·미완성 물품의 분류원칙 ② 미조립·분해물품의 분류원칙	종속적 분류원칙
		b	단일물품과 혼합물의 분류기준(단일물품의 확대범위)	
3	통칙 3	a	협의 표현 분류원칙	
		b	주요 특성 분류원칙	
		c	최종호 분류원칙	
4	통칙 4		유사물품 분류원칙	
별도	통칙 5		포장·용기 분류원칙	보완적 분류원칙
	통칙 6		소호 분류원칙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0), 「관세청분류코드(HSKCS)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범위 확대」, p. 52에서 인용.

소호(소호주)에 설정되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짐.

○ HS의 품목분류는 1988년 초판의 발효 이후 다섯 번의 개정을 통해 주로 하위계층인 '호'나 '소호'의 편성이 변경됨.

- '부'와 '류'는 기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합의되어 동일한 편성이 유지됨.
- 1992년 1차 개정은 어휘의 수정이나 '호'의 분할에 관한 것이었으나, 1996년 2차 개정부터는 최하위계층인 '소호'의 편성도 변경됨.

○ HS의 품목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므로 시계열적 연계나 비교를 위해서는 유의가 필요함.

- 기존분류와 신규분류 간에 일대일 대응관계로 변화된 경우는 시계열의 연속성이 유지되지만, '호'의 재조합 등에 의해 '소호'의 번호만이 수정 혹은 '호'의 코드를 유지하면서 품목의 정의가 수정된 경우는 주의가 필요함.

〈표 2-3〉 HS 품목(코드)구성의 변천

	HS 1988	HS 1992	HS 1996	HS 2002	HS 2007	HS 2012
Section(부)	21	21	21	21	21	21
Chapter(류)	96	96	96	96	96	96
Heading(호)	1,011	1,241	1,241	1,244	1,221	1,224
Sub-heading(소호)	5,019	5,018	5,113	5,224	5,052	5,205

자료 : 유엔통계국 분류파일 사이트(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dnld.asp?Lg=1)의 HS 버전별 코드표로부터 작성.

- 신규분류에서 단일품목으로 통합된 다대일의 대응관계로 변한 경우도 이들 품목들의 합계과정을 거치면 시계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 그러나 상품의 급속한 다양화로 인하여 기존분류에서 단일상품(호)이 신규분류에서 다품목으로 분할된 일대다의 대응관계로 변화한 경우나 다대다의 유형은 직접적인 비교나 연계가 불가함.

○ HS에 입각한 무역통계의 시계열적 연계나 비교를 위해서는 통상 세계관세기구(WCO)[10]의 대응표를 이용하지만, 일대일이나 다대일의 대응관계로 변화한 경우만 가능함.

- 다른 유형의 경우는 근사적 연계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기존과 신규의 기간격차가 클수록 시계열적 연계나

〈표 2-4〉 HS 개정판별 6단위 기준의 대응관계

	(2002 : 2007)	(1996 : 2007)	(1992 : 2007)
일대일 유형(1:1)	4,471	4,080	3,706
다대일 유형(m:1)	293	569	790
일대다 유형(1:m)	142	161	175
다대다 유형(m:m)	146	242	381
(일대다 + 다대다)	288	403	456

자료 : 野田容助 · 黒子正人編(2010),「貿易指數の作成と応用 : 貿易構造の変化と國際比較」, 調査研究報告書, 2009-II-03, アジア経濟研究所, p.54에서 인용.

10) 관세협력이사회(CCC)는 1994년 WTO의 출범과 함께 세계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명칭을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로 명칭을 변경함.

비교가 불가능한 일대다 혹은 다대다의 대응관계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 시계열의 연계나 비교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제3장
한국과 중국의 HS 현황과 세분화 비교

1. 한국 HS분류의 제정과 개정

○ 한국의 무역분류체계(HSK, HS of Korea)는 1987년 제정되어 1988년 시행, 이후 세계관세기구(WCO)의 HS협약 개정에 의해 다섯 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개정됨.

- 한국은 HS협약국으로 WCO에서 발표한 품목분류와 자국의 품목기준을 일치시킬 의무에 의해 1992년 1차, 1996년 2차, 2002년 3차, 2007년 4차 개정을 거쳐 2012년 5차 개정을 시행함.
- 1987년 제정 당시 "한국통일상품분류"로 명명하였으나 1992년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로 개명하여 현재에 이름.

○ 한국의 HS코드 분류는 2010년, 2009년과 동일. 전체 1만 1,881개에서 2011년 1만 1,900개로 소폭 증가한 후 2012년 1만 2,232개로 확대 개편됨.

〈표 3-1〉 한국 HS분류의 개정 연혁 및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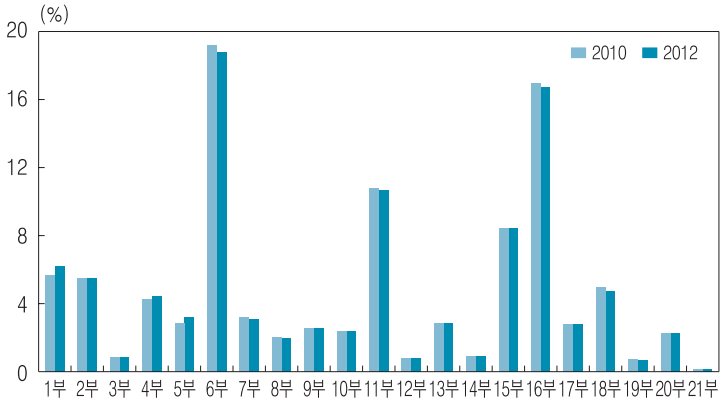
	개정개요	주요 개정품목	6단위 코드수	10단위 코드수
1차개정 (1992)	HS 제정 작업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 반영 및 호의 용어를 보완·개정	- 소호의 통합 및 신설 - 호의 용어 등	5,018	10,322
2차개정 (1996)	신상품의 개발과 국제기구에서 요청한 마약원료물질 및 오존층 파괴물질 등을 특정 호(또는 소호)에 신설	- 영상전화기, 팩시밀리, 휴대용 컴퓨터 등 - 마약원료물질 및 오존층파괴물질 등	5,113	10,859
3차개정 (2002)	폐기물 및 CITES협약대상 품목을 특정 호(또는 소호)에 신설하였으며 HS의 통일적용을 위한 용어정의 등을 마련	- 보증된 참조물질 및 산업 폐기물 등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 소매포장 정의 등	5,224	11,237
4차개정 (2007)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통제물질 및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특정상품에 대한 호(또는 소호) 를 신설하였으며 다양한 신상품의 개발로 인하여 종전의 용어정의 및 분류 기준을 보완	- 수은화합물,농약원료,청석면 등 유해물질 - 반도체 제조용 기기 - 유·무선 통신기기 등 - 신문용지, 합성섬유 및 재생섬유 등에 대한 용어	5,052	11,703
5차개정 (2012)	세계관세기구(WCO)의 제5차 HS협약 개정안(HS2012) 반영을 통해 한국의 상품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신상품 출현 및 무역형태 변화 등에 따른 산업계와 관련 부처의 개정요청 수용	- 전 세계 식량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분류체계 개정 -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분리 및 품명 부여 - 신제품(바이오디젤 등) 신설 및 교역량이 미미한(환등기 등) 품목 삭제 - 담배 소비세의 부과를 위해 “전자담배” 및 “니코틴 용액 카트리지” 품목코드 신설 - HS의 단순화를 위한 품목코드 통합 - 중국과 대외협상을 위해 통계관리 필요 품목코드 신설, 임산물, 철강제품 등	5,205	12,232

자료 : 기획재정부, 관세청.

- 1부 2011년 586개에서 2012년 760개로 증가, 동 기간 2부 590개에서 676개로 증가, 4부 516개에서 539개로 증가됨.
- 1~4부의 코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5.1%에서 2012년 17.0%로 증가함.
- 6부 화학 관련 품목의 경우 통제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통합관리와 오존파괴물질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관련 품목 코드 통합 및 세분화로 인해 2010년 2,300개에서 2012년 2,298개로 소폭 축소됨.
- 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의 경우 품목은 2010년 2,030개에서 2012년 2,044개로 세분화되었지만 전체 코드 수가 증가되면서 비중은 소폭 감소

○ 2012년 HSK 분류체계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제5차 HS협약

〈그림 3-1〉 한국 HS분류의 부(Section)별 비중 변화



자료 : 관세청.

개정안을 수용하여 한국의 상품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신상품 및 무역형태 변화 등 국내 산업계와 관련 부처의 요청을 수용함.

- 2012년 세계관세기구(WCO)는 HS의 주요 개정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공표함.
  : 균등한 적용을 위한 명명법의 정확도 향상, 환경과 식량안보 관련 상황들에 대한 고려, 현재 무역형태의 반영을 위한 명명법 개정,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반영 등으로 구분됨.

- 2012년 WCO HS협약의 개정 범위는 다음과 같음.
  : 54개류(Chapter: 중분류, HS-2단위)에 대한 조정, 95개 소호(Sub-heading: 세분류, HS-6단위) 삭제, 421개 소호(Sub-heading: 세분류, HS-6단위) 추가, 34개 소호(Sub-heading: 세분류, HS-6단위) 수정 등이 주요 개정 범위에 속함.

- 2012년 WCO HS협약의 분야별 개정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농림축산부문 98개, 화학부문 27개, 지류부문 9개, 섬유부문 14개, 비금속부문 5개, 기계 및 신기술 부문 30개, 기타 부문 37개 등이 주요 분야별 개정 범위임.

○ 세계관세기구(WCO)의 제5차 HS협약 개정안 적용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UN 식량농업기구(FAO)의 요청에 따라 전 세계 식량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농림수축산물에 대한 품목분류체계를 큰 폭으로 개정함.

: 현행 교역량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탈피하여 유사 생물종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수정, 교역량이 작더라도 생물종 기준(종명과 학명 포함)으로 품목구분을 신설·세분화함.

- 국제협약에 따라 통제대상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품목코드 통합 및 세분화를 시행
  : 수은화합물의 13개 품목분류를(6단위 기준) 2개로 통합, 기존 기타로 처리되던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해 별도 품목코드를 부여

- 최근 무역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신제품 품목코드의 신설 및 연간 교역량이 50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품목을 삭제
  : 바이오디젤 관련 품목코드(6단위 기준) 신설 및 환등기, 양모의류 등의 품목코드를 삭제

○ 산업계 및 관련 부처의 요청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해 무역통계 관리가 요구되는 임산물 및 철강제품에 대한 품목코드를 신설
  : 오미자, 구기자, 붕소합금강, 칼라강판 등

- 담배소비세 부과를 위해 관련 품목코드를 신설했으며, 최근 교역량 증가로 인해 수입동향 파악이 요구되는 품목코드를 신설함.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카트리지, 고추종자, 산양삼 등

○ 2012년 한국의 HS는 21부 97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10단위 기준

1만 2,232개의 품목코드로 구성됨.

- 농수축산물과 음식료, 담배 등을 포함하고 있는 1~4부, 01~24류의 10단위 코드는 2,083개로 전체 10단위 코드의 17.0%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03류(어패류)의 코드는 431개로 구성됨.
- 광물성 생산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5~7부, 25~40류의 10단위 코드는 3,071개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전체 코드의 25.1%를 점유, 특히 6부 화학제품의 코드는 2,298개로 전체 HS 분류에서 가장 세분화됨.
- 동물성 부제품(가죽, 모피 등), 나무 및 목제품, 종이 등을 포함하고 있는 8~10부, 41~49류의 10단위 코드는 84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코드의 6.9%를 점유함.
- 섬유제품, 신발, 모자 등으로 구성된 11~12부, 50~67류의 10단위 코드는 1,402개로 전체의 11.5%를 구성, 11부 섬유 제품의 품목은 1,302개로 세분화됨.
- 석고, 시멘트, 유리, 귀금속, 비금속 관련 제품을 포함하는 13~15부, 68~83류의 10단위 코드는 1,496개로 전체의 12.2%를 차지하며, 이 중 15부 비금속 관련 제품의 코드는 1,035개로 세분화됨.
-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관련 제품들로 구성된 16부, 84~85류의 코드는 2,044개로 전체의 16.7%를 차지하며 84류 보일러 및 기계류는 1,251개, 85류 전기기기 및 TV는 793개로 세분화됨.

〈표 3-2〉 부류별(HS-code) 한국 품목분류 코드수 변화 추이

부(Section:대분류)	류(Chapter:중분류)	해당코드수 (HS 10단위)		
		2012	2011	2010
1부 :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760	586	586
	01류 산동물	75	56	56
	02류 육과식용설육	117	97	97
	03류 어패류	431	300	300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69	65	65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68	68	68
2부 : 식물성 생산품		676	590	590
	06류 산수목·꽃	77	76	76
	07류 채소	145	134	134
	08류 과실·견과류	86	78	78
	09류 커피·차·향신료	52	39	39
	10류 곡물	44	32	32
	11류 곡물의분과조분밀가루·전분	47	47	47
	12류 채유용종자·인삼	177	136	136
	13류 식물성엑스	27	27	27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21	21	21
3부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류 동식물성 유지	108	102	102
4부 :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539	516	516
	16류 육·어류조제품	110	92	92
	17류 당류·설탕과자	34	33	33
	18류 코코아·초코렛	33	33	33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52	52	52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2	110	110
	21류 기타의 조제식료품	72	72	72
	22류 음료, 주류, 식초	52	52	52
	23류 조제사료	48	47	47
	24류 담배	26	25	25
5부 : 광물성 생산품		392	345	345
	25류 토석류·소금	145	145	145
	26류 광, 슬랙, 회	56	56	56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91	144	144

〈계속〉

부(Section:대분류)	류(Chapter:중분류)	해당코드수 (HS 10단위)		
		2012	2011	2010
6부 :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2298	2310	2300
	28류 무기화합물	405	401	393
	29류 유기화합물	914	922	922
	30류 의료용품	159	154	154
	31류 비료	38	38	38
	32류 염료, 안료, 페인트잉크	141	141	140
	33류 향료·화장품	68	68	68
	34류 비누, 계면활성제·왁스	52	53	53
	35류 카세인·알부민·변성전분·효소	58	58	58
	36류 화약류·성냥	22	22	22
	37류 필름인화지, 사진용재료	209	223	222
	38류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232	230	230
7부 :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381	381	381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235	235	235
	40류 고무와그 제품	146	146	146
8부 : 원피·가죽·모피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242	242	242
	41류 원피·가죽	67	67	67
	42류 가죽제품	117	117	117
	43류 모피, 모피제품	58	58	58
9부 : 목재와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 농 세공물 및 지조 세공물		314	314	314
	44류 목재·목탄	287	287	287
	45류 코르크·짚	7	7	7
	46류 조물재료의 제품	20	20	20
10부 :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288	291	291
	47류 펄프	29	29	29
	48류 지와 판지	224	227	227
	49류 서적·신문 인쇄물	35	35	35
11부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1302	1303	1303
	50류 견·견사견직물	37	37	37
	51류 양모·수모	58	58	58
	52류 면·면사면직물	181	181	181
	53류 마류의사와 직물	47	47	47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146	146	146

〈계속〉

부(Section:대분류)	류(Chapter:중분류)	해당코드수(HS 10단위)		
		2012	2011	2010
11부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248	248	248
	56류 워딩·부직포	49	50	50
	57류 양탄자	21	21	21
	58류 특수직물	60	60	60
	59류 침투, 도포한 직물	30	30	30
	60류 편물	45	45	45
	61류 의류(편물제)	152	152	152
	62류 의류(편물제 이외)	169	169	169
	63류 기타 섬유제품·넝마	59	59	59
12부 :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100	100	100
	64류 신발류	52	52	52
	65류 모자류	16	16	16
	66류 우산·지팡이	11	11	11
	67류 조제우모·인조제품	21	21	21
13부 :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343	343	343
	68류 석, 시멘트, 석면제품	89	89	89
	69류 도자제품	86	86	86
	70류 유리	168	168	168
14부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 장식용품과 주화	71류 귀석, 반귀석, 귀금속	118	118	118
15부 : 비금속과 그 제품		1035	1023	1022
	72류 철강	310	297	297
	73류 철강제품	210	210	210
	74류 동과 그 제품	87	87	87
	75류 니켈과 그 제품	27	27	27
	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60	60	60
	78류 연과 그 제품	20	20	20
	79류 아연과 그 제품	19	19	19
	80류 주석과 그 제품	14	14	14
	81류 기타의 비금속	88	88	88
	82류 비금속제공구, 스푼·포크	147	148	147
	83류 각종 비금속제품	53	53	53

〈계속〉

부(Section:대분류)	류(Chapter:중분류)	해당코드수(HS 10단위)		
		2012	2011	2010
16부 :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044	2038	2030
	84류 보일러·기계류	1251	1247	1240
	85류 전기기기·TV·VTR	793	791	790
17부 :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333	333	333
	86류 철도차량	48	48	48
	87류 일반차량	192	192	192
	88류 항공기	49	49	49
	89류 선박	44	44	44
18부 : 광학기기·사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586	593	593
	90류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441	446	446
	91류 시계	87	89	89
	92류 악기	58	58	58
19부 :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류 무기	81	87	87
20부 : 잡품		277	270	270
	94류 가구류·조명기구	89	89	89
	95류 완구·운동용구	94	93	93
	96류 잡품	94	88	88
21부 :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류 예술품·골동품	15	15	15

자료 : 관세청.

- 차량, 항공기, 선박 및 수송 관련 제품으로 구성된 17부, 86~89류의 코드는 333개로 전체 코드의 2.7%를 점유, 류별로는 86류(철도차량) 48개, 87류(일반차량) 192개, 88류(항공기) 49개, 89류(선박) 44개로 분류됨.

- 광학기기 및 정밀, 의료기기, 악기류를 포함하고 있는 18부,

90~92류의 코드는 586개로 전체 코드수의 4.8%를 점유, 그 중 90류 광학, 의료, 정밀기기의 코드는 441개로 세분화됨.

- 무기류에 해당하는 19부, 93류는 81개의 10단위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코드의 0.7%에 해당됨.
- 가구, 완구류 및 기타 물품으로 구성된 20부, 94~96류는 277개의 코드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의 2.3%를 점유함.

2. 중국 HS분류의 제정과 개정

○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이전까지 거의 100년에 달하는 수출입 관련 통계를 수집 및 관리하였고, 개방 이후에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무역통계를 작성함.

- 1949년 10월 중국정부는 해관총서(海關總署)를 설립하고, 1950년 초 해관에 통계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대외무역통계를 작성하여 배포함.
- 1966년부터 1978년까지의 문화혁명기에는 해관의 통계업무가 중단되었으나 1979년 이후 무역통계의 관리업무가 재개되었고, 1984년부터는 정기적으로 UN 통계국에 자료를 제출함.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은 1980년부터 1991년까지 국제무역기준분류(SITC) 제2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수출입 화물통계자료를 수집, 작성 및 공표함.

○ 1992년부터 HS협약에 의거하여 HS분류법을 기초로 한 무역상

품 분류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국제무역기준분류(STIC) 제3차 개정판을 근거로 수출입 상품에 대한 분류를 시행

○ 2001년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UN 무역국에서 권고한 국제무역 관련 기준과 정의를 온전히 수용하고 관련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국제기준의 상품분류체계를 갖춤.

- 중국의 HS코드 구성체계는 22부 99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21부 97류까지는 한국의 구성과 동일, 한국과의 차이점은 '22부 특수 교역품 및 분류상품'을 별도로 분류하였으며 98~99류를 포함

○ 2007년 중국은 세계관세기구(WCO)의 HS 분류코드 개편에 대응하여 HS 8단위 기준으로 약 1,600여 개의 품목분류 개정을 시행하였음.[11)]

- 개편의 주요 대상은 기계·전자제품, 화공제품, 방직품, 목제품, 금속 및 금속합금 등 5개 부문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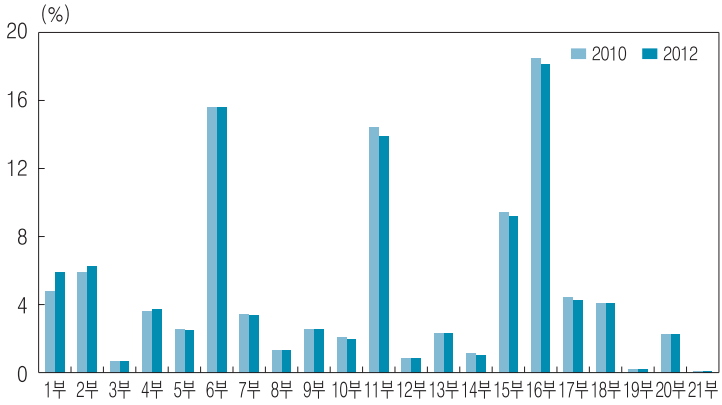
○ 중국의 HS코드 수는 8단위 기준으로 2010년 7,935개에서 2012년 8,217개로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세분화

- 어패류 및 축산물을 포함하고 있는 1부의 코드 수 확대가 가장 두드러지며 2010년 377개에서 2012년 488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부 식물성 생산품의 세분화도 큰 폭으로 시행되며 2010년 468개에서 2012년 510개로 확대 개편

11) 무역협회 해외시장정보, 「2007년 중국의 달라지는 HS코드」.

- 4부 식음료 및 담배 부문의 품목 분류도 2010년 287개에서 2012년 306개로 세분화되며 1~4부의 코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4.9%에서 2012년 16.6%로 증가함.
- 환경 및 규제화학물질에 대한 개편이 시행되면서 5부 광물성 생산물은 2010년 200개에서 2012년 205개로, 6부 화학 관련 품목은 2010년 1,235개에서 2012년 1,279개로 증가함.
- 13부 시멘트, 도자기, 유리 관련 품목도 2010년 186개에서 2012년 191개로 증가하였으며, 15부 비금속 관련 제품도 동기간 744개에서 756개로 증가함.
- 16부는 2010년 1,462개에서 2012년 1,485개로 세분화되었지만 전체 코드 수의 증가에 따라 비중은 18.4%에서 18.1%로 소폭 감소됨.

〈그림 3-2〉 중국 HS분류의 부(Section)별 비중 변화



자료 :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연호.

○ 중국은 세계관세기구(WCO)의 2012년 권고안을 수용하여 2007년 HS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약 53개류를 대상으로 개편을 시행함.

- 농수축산물과 환경 관련 HS 코드를 대폭 개정하였으며, 중국 특산품이 신규 품목으로 추가됨.
  : 농수축산물 관련하여 민물고기, 식용 조류, 야채, 견과류 등의 HS 분류코드가 세분화됨.
  : 환경 관련 품목으로는 오존층 파괴와 관련된 품목의 HS 코드가 수정 및 추가됨.
  : 중국 특산품과 관련하여 백합화, 보이차, 공항용 탑승 브릿지 등이 추가됨.
- 마약류 제조 원료 등에 대한 통제를 위해 관련 품목들에 대한 분류가 세분화됨.

○ 중국은 6단위 HS국제공통코드를 채용하고 있으며, 통계와 무역관리를 위해 중국의 자체 품목기준을 근거로 확장시킨 8단위 코드를 기본으로 이용함.

○ 2012년 중국의 품목분류표는 22부, 98류로 대별되며 HS 8단위 기준 8,217개의 품목코드로 세분화됨.

- 농수축산물과 음식료, 담배 등을 포함하고 있는 1~4부, 01~24류의 8단위 코드는 1,360개로 전체 코드의 16.6%를 차지하며, 이 중 03류 어패류의 코드는 257개로 분류됨.
- 광물성 생산품, 화학 관련 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관련 제품

을 포함하고 있는 5~7부, 25~40류의 10단위 코드는 1,755개로 전체 코드 수의 21.4%를 차지하며, 특히 6부 화학 관련 제품은 1,279개(15.6%)의 코드로 세분화됨.

- 동물성 부제품(가죽, 모피 등), 나무 및 목제품, 종이 등을 포함하고 있는 8~10부, 41~49류의 8단위 코드는 473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코드 수의 5.8%에 해당됨.
- 섬유 관련 제품 및 신발, 모자 등으로 구성된 11~12부, 50~67류의 8단위 코드는 1,210개로 전체의 14.7%를 차지하며, 그 중 11부 섬유 관련 제품의 품목 수가 1,141개로 세분화됨.
- 석고, 시멘트, 유리, 귀금속, 비금속 관련 제품을 포함하는 13~15부, 68~83류의 8단위 코드는 1,034개로 전체의 12.6% 점유, 15부 비금속 관련 제품의 코드는 756개(9.2%)로 세분화됨.
-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관련 제품들로 구성된 16부, 84~85류의 코드는 1,485개로 전체의 18.1%에 해당, 84류 보일러 및 기계류는 981개, 85류 전기기기는 504개로 세분화됨.
- 차량, 항공기, 선박 및 수송 관련 제품으로 구성된 17부, 86~89류의 코드는 349개로 전체 코드의 4.2% 점유, 86류 철도차량 41개, 87류 일반차량 248개, 88류 항공기 18개, 89류 선박 42개로 세분화됨.
- 광학기기 및 정밀, 의료기기, 악기류를 포함하고 있는 18부, 90~92류의 코드는 331개로 전체 코드의 4.0%에 해당, 90류 광학, 의료, 정밀기기의 코드는 255개로 분류됨.

〈표 3-3〉 부류별(HS-code) 중국 품목분류 코드수 변화 추이

부(Section:대분류)	류(Chapter:중분류)	해당코드수 (HS 8단위)		
		2012	2011	2010
1부 :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488	378	377
	01류 산동물	70	51	51
	02류 육과식용설육	79	79	79
	03류 어패류	257	165	165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39	39	39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43	44	43
2부 : 식물성 생산품		510	467	468
	06류 산수목·꽃	31	30	30
	07류 채소	123	112	112
	08류 과실·견과류	92	83	83
	09류 커피·차·향신료	48	40	40
	10류 곡물	36	28	28
	11류 곡물의분과조분밀가루·전분	35	36	36
	12류 채유용종자·인삼	114	108	109
	13류 식물성엑스	21	20	20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10	10	10
3부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납	15류 동식물성 유지	56	54	54
4부 :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306	287	287
	16류 육·어류 조제품	61	48	48
	17류 당류·설탕과자	19	18	18
	18류 코코아·초코렛	11	11	11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2	22	22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02	98	98
	21류 기타의 조제식료품	22	22	22
	22류 음료, 주류, 식초	27	27	27
	23류 조제사료	30	30	30
	24류 담배	12	11	11
5부 : 광물성 생산품		205	200	200
	25류 토석류·소금	92	90	90
	26류 광, 슬랙, 회	44	44	44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69	66	66

〈계속〉

부(Section:대분류)	류(Chapter:중분류)	해당코드수 (HS 8단위)		
		2012	2011	2010
		1,279	1,257	1,235
6부 :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28류 무기화합물	311	282	265
	29류 유기화합물	533	537	533
	30류 의료용품	79	79	78
	31류 비료	29	29	29
	32류 염료, 안료, 페인트잉크	59	59	59
	33류 향료·화장품	42	42	42
	34류 비누, 계면활성제·왁스	27	27	27
	35류 카세인·알부민·변성전분·효소	21	21	21
	36류 화약류·성냥	11	11	11
	37류 필름인화지, 사진용 재료	63	67	67
	38류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104	103	103
7부 :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271	270	269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61	160	159
	40류 고무와 그 제품	110	110	110
8부 : 원피·가죽·모피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106	106	107
	41류 원피·가죽	60	60	60
	42류 가죽제품	26	26	26
	43류 모피, 모피제품	20	20	21
9부 : 목재와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재료의 제품, 농 세공물 및 지조 세공물		207	206	204
	44류 목재·목탄	175	174	172
	45류 코르크·짚	8	8	8
	46류 조물재료의 제품	24	24	24
10부 :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160	163	161
	47류 펄프	21	21	21
	48류 지와 판지	114	117	116
	49류 서적·신문인쇄물	25	25	24
11부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1,141	1,140	1,141
	50류 견·견사견직물	28	28	28
	51류 양모·수모	59	59	61
	52류 면·면사면직물	129	129	129
	53류 마류의사와 직물	43	43	43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113	111	111

〈계속〉

부(Section:대분류)	류(Chapter:중분류)	해당코드수 (HS 8단위)		
		2012	2011	2010
11부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133	131	130
	56류 워딩·부직포	40	41	41
	57류 양탄자	27	27	27
	58류 특수직물	67	67	67
	59류 침투, 도포한 직물	42	42	42
	60류 편물	60	60	60
	61류 의류(편물제)	132	132	132
	62류 의류(편물제 이외)	167	169	169
	63류 기타 섬유제품·넝마	101	101	101
12부 :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69	68	68
	64류 신발류	39	38	38
	65류 모자류	13	13	13
	66류 우산·지팡이	6	6	6
	67류 조제우모·인조제품	11	11	11
13부 :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191	187	186
	68류 석, 시멘트, 석면제품	74	73	72
	69류 도자제품	31	31	31
	70류 유리	86	83	83
14부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 장식용품과 주화	71류 귀석, 반귀석, 귀금속	87	86	86
15부 : 비금속과 그 제품		756	744	744
	72류 철강	211	208	208
	73류 철강제품	163	162	162
	74류 동과 그 제품	80	76	76
	75류 니켈과 그 제품	24	24	24
	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53	50	50
	78류 연과 그 제품	9	9	9
	79류 아연과 그 제품	12	12	12
	80류 주석과 그 제품	11	11	11
	81류 기타의 비금속	74	74	74
	82류 비금속제 공구, 스푼·포크	81	80	80
	83류 각종 비금속제품	38	38	38

〈계속〉

부(Section:대분류)	류(Chapter:중분류)	해당코드수 (HS 8단위)		
		2012	2011	2010
16부 :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485	1,473	1,462
	84류 보일러·기계류	981	973	964
	85류 전기기기·TV·VTR	504	500	498
17부 :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349	349	349
	86류 철도차량	41	41	41
	87류 일반차량	248	248	248
	88류 항공기	18	18	18
	89류 선박	42	42	42
18부 : 광학기기·사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331	329	322
	90류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255	252	245
	91류 시계	54	55	55
	92류 악기	22	22	22
19부 :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류 무기	20	21	21
20부 : 잡품		184	180	178
	94류 가구류·조명기구	60	60	60
	95류 완구·운동용구	57	56	55
	96류 잡품	67	64	63
21부 :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류 예술품·골동품	9	9	9
22부 : 특수교역 품 및 분류상품	98류	7	7	7

자료 :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연호.

- 무기 및 탄환 관련 제품인 19부, 93류는 20개의 8단위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코드의 0.2%에 해당됨.
- 가구, 완구류 및 기타 물품으로 구성된 20부, 94~96류는 184개의 코드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의 2.2%, 21부, 97류 예술품, 골동품의 코드는 9개로 구분됨.

3. 한국과 중국의 HS 세분화 정도 비교

○ 한국과 중국의 HS 품목분류의 세분화 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전체 품목코드에서 해당 품목군이 점유하는 비중을 비교

- HS 분류체계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 내 산업의 보호 및 발전과 수출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규제 및 지원을 위해 6단위 이상에서 품목코드를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게 세분화
- 한국은 10단위, 중국은 8단위와 10단위 혼용, EU는 8단위, 일본은 9단위 체계를 사용
- 한·중 양국의 동일 품목군별 HS분류의 세분화 정도 비교를 통해 자국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무역정책 운영의 대략적인 의도 파악이 가능
- 일례로 중국 정부는 붕소 첨가 선재 및 철근 제품을 대상으로 신규 HS코드 적용계획 발표, 중국 정부는 HS코드 세분화를 통해 저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축소하여 수출 확대를 제한하고자 함.[12)]
  : 중소형업체들의 저가·저품질의 붕소 첨가제품 생산 및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

○ 한·중 간 HS코드의 품목군별 비중에서 1부, 3부, 4부 등 농축산물 관련 품목과 5부 광물 관련 품목, 6부 화학 관련 품목의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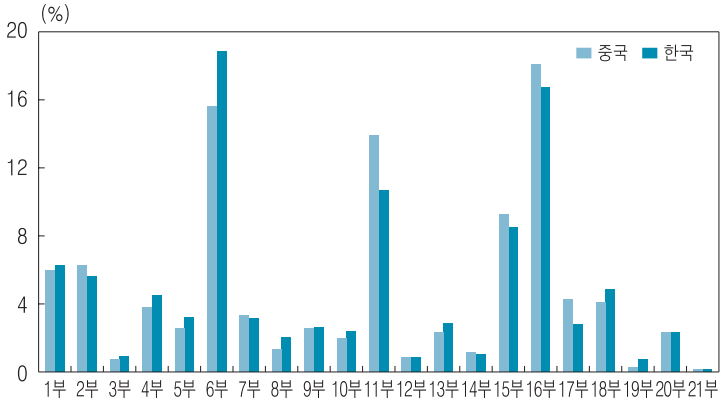
12) 스틸데일리, 2012.12.26

분화 정도는 한국이 높은 반면, 11부 섬유 관련 품목, 15부 비금속 관련 품목, 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17부 수송용 기계류의 세분화 정도는 중국이 높음.

- 6부 화학 관련 품목과 85류 전기기기 관련 품목들은 한·중 간 교역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가공무역 비중이 월등히 높아 품목분류의 세분화를 통해 역수입 통계의 수집 및 관리가 필요

- 11부 섬유 관련 품목들과 15부 비금속 관련 품목들은 중국의 세분화 정도가 한국에 비해 높은데, 이는 중국 정부가 노동집약적이며 저부가가치, 공해유발 품목들에 대해 지속적인 가공무역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섬유와 비금속 관련 품목들에 대해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3-3〉 2012년 한·중 HS 부(Section)별 비중 비교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연호.

- 중국 정부는 품목세분화를 해당 품목들을 생산하는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우회적인 구조조정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공무역을 통해 중국을 수출무역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 17부 수송용 기계류 중 87류 일반차량의 경우도 중국의 세분화 정도가 높은데, 이는 중국 정부의 완성차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며, 일반차량 관련 품목의 세분화를 통해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자국 내 완성차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음.
-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조치 확대 및 자국 산업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IT산업과 정보통신 기술 등의 신기술 개발에 따라 HS코드 세분화 및 개정은 향후 더욱 빈번해질 것이며 개정 폭도 커질 가능성 높음.
- 한국 산업발전과 수출확대를 위해 제일의 교역대상국인 중국의 품목 분류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품목군별 세분화 정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

〈표 3-4〉 한·중 간 HS 품목분류 코드수 비중 변화 추이

부(Section:대분류)	류(Chapter:중분류)	한국 HS10 코드수 비중변화(%)			중국 HS8 코드수 비중변화(%)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1부 :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6.2	4.9	4.9	5.9	4.7	4.8
	01류 산동물	0.6	0.5	0.5	0.9	0.6	0.6
	02류 육과식용설육	1.0	0.8	0.8	1.0	1.0	1.0
	03류 어패류	3.5	2.5	2.5	3.1	2.1	2.1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0.6	0.5	0.5	0.5	0.5	0.5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6	0.6	0.6	0.5	0.6	0.5
2부 : 식물성 생산품		5.5	5.0	5.0	6.2	5.9	5.9
	06류 산수목·꽃	0.6	0.6	0.6	0.4	0.4	0.4
	07류 채소	1.2	1.1	1.1	1.5	1.4	1.4
	08류 과실·견과류	0.7	0.7	0.7	1.1	1.0	1.0
	09류 커피·차·향신료	0.4	0.3	0.3	0.6	0.5	0.5
	10류 곡물	0.4	0.3	0.3	0.4	0.4	0.4
	11류 곡물의분과조분밀가루·전분	0.4	0.4	0.4	0.4	0.5	0.5
	12류 채유용종자·인삼	1.4	1.1	1.1	1.4	1.4	1.4
	13류 식물성엑스	0.2	0.2	0.2	0.3	0.3	0.3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0.2	0.2	0.2	0.1	0.1	0.1
3부 : 동식물성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류 동식물성 유지	0.9	0.9	0.9	0.7	0.7	0.7
4부 :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4.4	4.3	4.3	3.7	3.6	3.6
	16류 육·어류조제품	0.9	0.8	0.8	0.7	0.6	0.6
	17류 당류·설탕과자	0.3	0.3	0.3	0.2	0.2	0.2
	18류 코코아·초콜릿	0.3	0.3	0.3	0.1	0.1	0.1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0.4	0.4	0.4	0.3	0.3	0.3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0.9	0.9	0.9	1.2	1.2	1.2
	21류 기타의 조제식료품	0.6	0.6	0.6	0.3	0.3	0.3
	22류 음료, 주류, 식초	0.4	0.4	0.4	0.3	0.3	0.3
	23류 조제사료	0.4	0.4	0.4	0.4	0.4	0.4
	24류 담배	0.2	0.2	0.2	0.1	0.1	0.1
5부 : 광물성 생산품		3.2	2.9	2.9	2.5	2.5	2.5
	25류 토석류·소금	1.2	1.2	1.2	1.1	1.1	1.1
	26류 광, 슬랙, 회	0.5	0.5	0.5	0.5	0.6	0.6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	1.6	1.2	1.2	0.8	0.8	0.8

〈계속〉

부(Section:대분류)	류(Chapter:중분류)	한국 HS10 코드수 비중변화(%)			중국 HS8 코드수 비중변화(%)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6부 :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18.8	19.4	19.4	15.6	15.7	15.6
	28류 무기화합물	3.3	3.4	3.3	3.8	3.5	3.3
	29류 유기화합물	7.5	7.7	7.8	6.5	6.7	6.7
	30류 의료용품	1.3	1.3	1.3	1.0	1.0	1.0
	31류 비료	0.3	0.3	0.3	0.4	0.4	0.4
	32류 염료, 안료, 페인트잉크	1.2	1.2	1.2	0.7	0.7	0.7
	33류 향료·화장품	0.6	0.6	0.6	0.5	0.5	0.5
	34류 비누, 계면활성제·왁스	0.4	0.4	0.4	0.3	0.3	0.3
	35류 카세인·알부민·변성전분·효소	0.5	0.5	0.5	0.3	0.3	0.3
	36류 화약류·성냥	0.2	0.2	0.2	0.1	0.1	0.1
	37류 필름인화지, 사진용재료	1.7	1.9	1.9	0.8	0.8	0.8
	38류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1.9	1.9	1.9	1.3	1.3	1.3
7부 :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3.1	3.2	3.2	3.3	3.4	3.4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1.9	2.0	1.9	2.0	2.0	2.0
	40류 고무와 그 제품	1.2	1.2	1.2	1.3	1.4	1.4
8부 : 원피·가죽·모피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2.0	2.0	2.0	1.3	1.3	1.3
	41류 원피·가죽	0.5	0.6	0.6	0.7	0.8	0.8
	42류 가죽제품	1.0	1.0	1.0	0.3	0.3	0.3
	43류 모피, 모피제품	0.5	0.5	0.5	0.2	0.3	0.3
9부 : 목재와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재료의 제품, 농 세공물 및 지조 세공물		2.6	2.6	2.6	2.5	2.6	2.6
	44류 목재·목탄	2.3	2.4	2.4	2.1	2.2	2.2
	45류 코르크·짚	0.1	0.1	0.1	0.1	0.1	0.1
	46류 조물재료의 제품	0.2	0.2	0.2	0.3	0.3	0.3
10부 :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2.4	2.4	2.4	1.9	2.0	2.0
	47류 펄프	0.2	0.2	0.2	0.3	0.3	0.3
	48류 지와 판지	1.8	1.9	1.9	1.4	1.5	1.5
	49류 서적·신문 인쇄물	0.3	0.3	0.3	0.3	0.3	0.3
11부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10.6	10.9	11.0	13.9	14.3	14.4
	50류 견·견사견직물	0.3	0.3	0.3	0.3	0.4	0.4
	51류 양모·수모	0.5	0.5	0.5	0.7	0.7	0.8
	52류 면·면사면직물	1.5	1.5	1.5	1.6	1.6	1.6
	53류 마류의사와 직물	0.4	0.4	0.4	0.5	0.5	0.5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	1.2	1.2	1.2	1.4	1.4	1.4

〈계속〉

부(Section:대분류)	류(Chapter:중분류)	한국 HS10 코드수 비중변화(%)			중국 HS8 코드수 비중변화(%)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11부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2.0	2.1	2.1	1.6	1.6	1.6
	56류 워딩·부직포	0.4	0.4	0.4	0.5	0.5	0.5
	57류 양탄자	0.2	0.2	0.2	0.3	0.3	0.3
	58류 특수직물	0.5	0.5	0.5	0.8	0.8	0.8
	59류 침투, 도포한 직물	0.2	0.3	0.3	0.5	0.5	0.5
	60류 편물	0.4	0.4	0.4	0.7	0.8	0.8
	61류 의류(편물제)	1.2	1.3	1.3	1.6	1.7	1.7
	62류 의류(편물제 이외)	1.4	1.4	1.4	2.0	2.1	2.1
	63류 기타 섬유제품·넝마	0.5	0.5	0.5	1.2	1.3	1.3
12부 :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0.8	0.8	0.8	0.8	0.9	0.9
	64류 신발류	0.4	0.4	0.4	0.5	0.5	0.5
	65류 모자류	0.1	0.1	0.1	0.2	0.2	0.2
	66류 우산·지팡이	0.1	0.1	0.1	0.1	0.1	0.1
	67류 조제우모·인조제품	0.2	0.2	0.2	0.1	0.1	0.1
13부 :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2.8	2.9	2.8	2.3	2.3	2.3
	68류 석, 시멘트, 석면제품	0.7	0.7	0.7	0.9	0.9	0.9
	69류 도자제품	0.7	0.7	0.7	0.4	0.4	0.4
	70류 유리	1.4	1.4	1.4	1.0	1.0	1.0
14부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 장식용품과 주화	71류 귀석, 반귀석, 귀금속	1.0	1.0	1.0	1.1	1.1	1.1
15부 : 비금속과 그 제품		8.5	8.6	8.6	9.2	9.3	9.4
	72류 철강	2.5	2.5	2.5	2.6	2.6	2.6
	73류 철강제품	1.7	1.8	1.8	2.0	2.0	2.0
	74류 동과 그 제품	0.7	0.7	0.7	1.0	1.0	1.0
	75류 니켈과 그 제품	0.2	0.2	0.2	0.3	0.3	0.3
	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0.5	0.5	0.5	0.6	0.6	0.6
	78류 연과 그 제품	0.2	0.2	0.2	0.1	0.1	0.1
	79류 아연과 그 제품	0.2	0.2	0.2	0.1	0.2	0.2
	80류 주석과 그 제품	0.1	0.1	0.1	0.1	0.1	0.1
	81류 기타의 비금속	0.7	0.7	0.7	0.9	0.9	0.9
	82류 비금속제 공구, 스푼·포크	1.2	1.2	1.2	1.0	1.0	1.0
	83류 각종 비금속제품	0.4	0.4	0.4	0.5	0.5	0.5

〈계속〉

부(Section:대분류)	류(Chapter:중분류)	한국 HS10 코드수 비중변화(%)			중국 HS8 코드수 비중변화(%)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16부 :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6.7	17.1	17.1	18.1	18.5	18.4
	84류 보일러·기계류	10.2	10.5	10.4	11.9	12.2	12.1
	85류 전기기기·TV·VTR	6.5	6.6	6.6	6.1	6.3	6.3
17부 :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2.7	2.8	2.8	4.2	4.4	4.4
	86류 철도차량	0.4	0.4	0.4	0.5	0.5	0.5
	87류 일반차량	1.6	1.6	1.6	3.0	3.1	3.1
	88류 항공기	0.4	0.4	0.4	0.2	0.2	0.2
	89류 선박	0.4	0.4	0.4	0.5	0.5	0.5
18부 : 광학기기·사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8	5.0	4.9	4.0	4.1	4.1
	90류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3.6	3.7	3.7	3.1	3.2	3.1
	91류 시계	0.7	0.7	0.7	0.7	0.7	0.7
	92류 악기	0.5	0.5	0.5	0.3	0.3	0.3
19부 :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류 무기	0.7	0.7	0.7	0.2	0.3	0.3
20부 : 잡품		2.3	2.3	2.2	2.2	2.3	2.2
	94류 가구류·조명기구	0.7	0.7	0.7	0.7	0.8	0.8
	95류 완구·운동용구	0.8	0.8	0.8	0.7	0.7	0.7
	96류 잡품	0.8	0.7	0.7	0.8	0.8	0.8
21부 :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류 예술품·골동품	0.1	0.1	0.1	0.1	0.1	0.1
22부 : 특수교역 품 및 분류상품	98류	-	-	-	0.1	0.1	0.1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연호.

제4장
한국과 중국의 관세 현황

1. 한국의 관세 현황

○ 한국의 대중국 수입 관세율 분석을 위해 기본세율, WTO 일반협정관세율(가, 나(쿼터), 다(쿼터)), 아태무역협정관세율(APTA)을 종합적으로 적용[13]

- 기본세율은 관세법 제50조에 의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에 기본세율로 정해진 관세율로 수입물품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임.

- WTO 일반협정관세는 WTO 가입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하는 일반양허관세율로 WTO 정회원국, 편익관세 적용대상국, 쌍무협정에 의해 규정된 최혜국조항 적용국 등 거의 모든 국가에 적용됨.

  : WTO 일반협정관세는 '별표 1-가'에서 일반양허관세율을

1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종합세율정보.

정의하고 있으며, '별표 2-나'와 '별표 3-다'에서 쿼터물량 및 시장접근 물량에 대해 정의함.

- 아태무역협정관세(APTA)는 아·태협정[14]에 의하여 동 협정에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임.
  : 적용대상국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빈국(방글라데시, 라오스)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특별양허세율을 허용함.

○ 실질관세율을 추정하기 위해 중국과 관련성이 높은 협정관세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였으며 동일 품목에 대한 관세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를 실질관세율로 선정하였음.

- 실질관세율=min(기본세율, WTO 일반협정관세, 아태무역협정관세

- 관세법 제 50조에 따르면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는 6순위 기본세율로부터 5순위 잠정세율, 4순위 일반특혜관세, 3순위 조정, 할당관세, 2순위 WTO, FTA세율 및 농림축산양허관세, 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등으로 구분됨.

○ 2010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의 경우 1만 1,881개의 품목에 대해 평균 9.0%의 관세율이 부과되어 있으며 WTO 일반협정관세율의 경우 1만 565개 품목에 대해 평균 11.4%의 관세율이 적용됨.

14)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국 회원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

〈표 4-1〉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관세법 50조)

적용 순위	세율 종류	비고
1순위 (제50조제2항제1호)	덤핑방지관세(제51조), 상계관세(제57조), 보복관세(제63조), 긴급관세(제65조), 특정국물품긴급관세(제67조의2),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68조)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 적용
2순위 (제50조제2항제2호)	국제협력관세(제73조), 편익관세(제74조) WTO양허관세에 의한 별표1의 가, 별표2, 별표3의 가, 별표3의 나, 별표3의 라, 별표3의 마, 별표4의 세율 자유무역협정(FTA)세율 농림축산물양허관세(WTO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 및 별표3의 다) (제50조제3항 단서)	3, 4, 5, 6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 단, 농림축산물양허관세는 세율이 높은 경우에도 5, 6순위 세율보다 우선 적용
3순위 (제50조제2항제3호)	조정관세(제69조), 할당관세(제71조), 계절관세(제72조)	할당관세(제71조)규정에 의한 세율은 일반특혜 관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순위 (제76조제3항)	일반특혜관세(최빈특혜)(제76조제3항)	
5순위 (제50조)	잠정세율(제50조)	
6순위 (제50조)	기본세율(제50조)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종합세율정보.

- 1부(산 동물)는 586개의 품목으로 분류되며 기본세율은 평균 16.7%, WTO 협정세율은 평균 17.9%로 책정되어 있으며 그 중 관세배정 항목은 297개, 쿼터 배정항목은 60개로 구성됨.
- 축산물이 포함된 2부는 590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본세율은 평균 18.3%, WTO 일반협정세율은 평균 27.2%이며 관세배정 코드 수는 453개, 쿼터코드 수는 134개로 가장 많은 품목에 대해 쿼터를 배정하고 있음.

- 음식료와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하고 있는 4부는 516개의 코드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본세율은 평균 19.6%, WTO 일반협정세율은 평균 34.5%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섬유와 신발, 모자 등을 포함하고 있는 11, 12부의 경우 평균 기본세율은 각각 9.5%, 10.1%이고, WTO 일반협정세율은 18.4%, 13.0%이며 11부는 5개 품목에 대해 쿼터를 배정함.
- 화학 관련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6부의 평균 기본세율은 7.5%이며 평균 WTO 일반협정세율은 6.2%로 다소 낮게 책정됨.
- 16부 기계류 및 전자기기 관련 제품의 평균 기본세율은 7.8%이며, WTO 일반협정세율은 8.6%로 책정됨.
- 자동차 관련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17부의 평균 기본세율은 6.3%이며, 평균 WTO 일반협정세율은 8.1%로 책정됨.

○ 대중국 관세율(단순평균)과 대중국 수입규모를 가중치로 이용한 가중평균관세율의 비교를 통해 현행 관세율의 효과에 대해 파악이 가능함.

- 2010년 기준 대중국 가중평균관세율은 4.2%로 단순평균관세율 대비 4.8%포인트 낮은 수준임.
- 가중평균관세율이 단순평균관세율보다 높은 경우 실제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에 비교적 높은 관세가 적용되어 관세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4-2〉 2010년 대중국 수입 기본관세율 및 WTO 일반협정관세율(부류별)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코드수 (HSK10)	기본세율 (단순평균, %)	WTO		
				협정 관세율(%)	관세 코드수	쿼터 코드수
1부	01-05류	586	16.7	17.9	297	60
2부	06-14류	590	18.3	27.2	453	134
3부	15류	102	9.7	20.1	101	1
4부	16-24류	516	19.6	34.5	453	32
5부	25-27류	345	3.5	5.6	298	
6부	28-38류	2,300	7.5	6.2	2,188	11
7부	39-40류	381	7.6	8.5	376	
8부	41-43류	242	7.9	12.4	189	
9부	44-46류	314	5.5	9.5	214	
10부	47-49류	291	6.1	0.0	290	
11부	50-63류	1,303	9.5	18.4	1,297	5
12부	64-67류	100	10.1	13.0	100	
13부	68-70류	343	7.8	13.5	290	
14부	71류	118	5.2	8.2	118	
15부	72-83류	1,022	6.9	7.3	1,017	
16부	84-85류	2,030	7.8	8.6	1,705	
17부	86-89류	333	6.3	8.1	251	
18부	90-92류	593	7.9	9.2	561	
19부	93류	87	3.7	6.4	87	
20부	94-96류	270	7.9	9.1	265	
21부	97류	15	0.0	0.0	15	
전 체	97	11,881	9.0	11.4	10,565	243

자료 : 관세청.

-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2부(식물성 생산품)와 3부(동물성 유지 등)의 경우 가중평균관세율이 각각 26.4%, 11.8%로 실질관세율보다 높게 나타지만 4부(음식료와 담배 등)의 경우 가중평균관세율은 13.8%로 실질관세율보다 5.8%포인트 낮게 나타남.

- 섬유류와 신발, 모자 등을 포함하고 있는 11~12부의 경우 단순평균관세율과 가중평균관세율의 차이가 미미한 수준으로 각각 0.1%포인트, 0.6%포인트 차이에 그침.

〈표 4-3〉 2010년 대중국 수입규모 및 실질관세율(부·류별)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코드수 (HSK10)	대중국 수입규모 (백만 달러)	대중국 관세율 (가중평균, %)	대중국 관세율 (단순평균, %)
1부	01-05류	586	985	13.0	16.7
2부	06-14류	590	1,009	26.4	18.3
3부	15류	102	23	11.8	9.7
4부	16-24류	516	1,054	13.8	19.6
5부	25-27류	345	2,437	1.1	3.5
6부	28-38류	2,300	5,085	4.8	7.5
7부	39-40류	381	1,626	6.3	7.6
8부	41-43류	242	732	6.6	7.9
9부	44-46류	314	429	6.0	5.5
10부	47-49류	291	421	0.0	6.1
11부	50-63류	1,303	5,126	9.4	9.5
12부	64-67류	100	1,000	9.5	10.1
13부	68-70류	343	1,992	7.8	7.8
14부	71류	118	107	4.9	5.2
15부	72-83류	1,022	11,400	1.6	6.9
16부	84-85류	2,030	30,461	2.5	7.8
17부	86-89류	333	2,719	3.3	6.3
18부	90-92류	593	3,070	5.4	7.9
19부	93류	87	1	2.1	3.7
20부	94-96류	270	1,888	4.3	7.9
21부	97류	15	8	0.0	0.0
전 체	97	11,881	71,574	4.2	9.0

자료 : 관세청.

- 토석류 및 광물성연료 등이 포함된 5부의 단순평균관세율은 3.5%이지만 가중평균관세율은 1.1%로 실제적으로 수입되는 품목들에 대한 관세부과는 낮은 수준임.

○ 2011년도 대중국 수입 기본관세율 및 WTO 일반협정관세율은 2010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

- HS 10단위 기준으로 기본관세가 배정된 품목 수는 2011년도에 소폭 증가하여 1,881개에서 1만 1,900개로 증가했으며, WTO 일반협정관세율 대상 품목은 2010년 1만 565개에서 2011년 1만 582개로 소폭 증가

- 쿼터 배정 품목은 2010년, 2011년 모두 243개로 동일

○ 2011년 대중국 수입 관련 실질관세율 및 가중평균관세율은 2010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 2부 식물성 생산품의 단순평균관세율이 2010년 18.3%에서 2011년 18.7%로 소폭 상승했지만 가중평균관세율은 각각 26.4%에서 23.9%로 소폭 감소하여, 실질적인 개방폭은 다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광물성 생산품을 포함하고 있는 5부의 가중평균관세율은 2010년 1.1%에서 2011년 1.5%로 소폭 증가했으며, 신발, 모자류 등의 12부는 가중평균관세율의 경우 2010년 9.5%에서 2011년 10.2%로 증가함.

○ 2012년 대중국 수입기본관세율은 품목 전체에 대해서 2011년 9.0%에서 9.2%로 소폭 상승함.

〈표 4-4〉 2011년 대중국 수입 기본관세율 및 WTO 일반협정관세율(부·류별)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코드수 (HSC10)	기본세율 (단순평균, %)	WTO		
				협정 관세율(%)	관세 코드수	쿼터 코드수
1부	01-05류	586	16.7	17.9	297	60
2부	06-14류	590	18.3	27.2	453	134
3부	15류	102	9.7	20.1	101	1
4부	16-24류	516	19.6	34.5	453	32
5부	25-27류	345	3.5	5.6	298	
6부	28-38류	2,310	7.5	6.2	2,198	11
7부	39-40류	381	7.6	8.5	376	
8부	41-43류	242	7.7	12.4	189	
9부	44-46류	314	5.5	9.5	214	
10부	47-49류	291	6.1	0.0	290	
11부	50-63류	1,303	9.5	18.4	1,297	5
12부	64-67류	100	10.1	13.0	100	
13부	68-70류	343	7.8	13.5	290	
14부	71류	118	5.2	8.2	118	
15부	72-83류	1,023	6.9	7.3	1,018	
16부	84-85류	2,038	7.8	8.6	1,711	
17부	86-89류	333	6.3	8.1	251	
18부	90-92류	593	7.9	9.2	561	
19부	93류	87	3.7	6.4	87	
20부	94-96류	270	7.9	9.1	265	
21부	97류	15	0.0	0.0	15	
전체	97	11,900	9.0	11.4	10,582	243

자료 : 관세청.

- 기본관세가 배정된 품목의 수도 2011년 1만 1,900개에서 2012년 1만 2,232개로 증가하고, 수입쿼터가 배정된 품목의 경우도 2011년 243개 품목에서 2012년 272개로 증가함.

〈표 4-5〉 2011년 대중국 수입규모 및 실질관세율(부·류별)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코드수 (HSC10)	대중국 수입규모 (백만 달러)	대중국 관세율 (가중평균, %))	대중국 실질관세율 (단순평균, %))
1부	01-05류	586	1,155	13.2	16.6
2부	06-14류	590	1,316	23.9	18.7
3부	15류	102	21	12.8	9.7
4부	16-24류	516	1,166	14.2	19.6
5부	25-27류	345	2,646	1.5	3.4
6부	28-38류	2,310	6,850	4.6	5.6
7부	39-40류	381	2,072	6.3	6.4
8부	41-43류	242	914	6.5	6.8
9부	44-46류	314	585	6.3	5.0
10부	47-49류	291	491	0.0	0.0
11부	50-63류	1,303	6,235	9.4	9.0
12부	64-67류	100	1,247	10.2	9.2
13부	68-70류	343	2,293	7.7	7.4
14부	71류	118	146	4.3	4.9
15부	72-83류	1,023	15,073	1.6	3.9
16부	84-85류	2,038	35,647	2.8	5.5
17부	86-89류	333	2,427	4.4	5.1
18부	90-92류	593	4,056	5.3	6.4
19부	93류	87	1	3.1	3.7
20부	94-96류	270	2,061	4.4	5.2
21부	97류	15	24	0.0	0.0
전체	97	11,900	86,426	4.4	7.5

자료 : 관세청.

○ 2012년 대중국 실질관세율(단순평균)은 2011년 7.5%에서 2012년 4.6%로 감소했으나 가중평균관세율은 4.4%에서 7.8%로 증가하여, 관세율이 비교적 높게 부과된 품목들에 대한 수입규모

〈표 4-6〉 2012년 대중국 수입 기본관세율 및 WTO 일반협정관세율(부·류별)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코드수 (HSC10)	기본세율 (단순평균, %)	WTO		
				협정 관세율(%)	관세 코드수	쿼터 코드수
1부	01-05류	760	16.9	18.0	350	71
2부	06-14류	676	18.7	27.5	517	152
3부	15류	108	8.0	20.1	107	1
4부	16-24류	539	19.6	34.6	457	32
5부	25-27류	392	3.8	6.3	332	
6부	28-38류	2,298	7.5	6.2	2,185	11
7부	39-40류	381	7.5	8.5	376	
8부	41-43류	242	7.7	12.4	189	
9부	44-46류	314	5.5	9.5	214	
10부	47-49류	288	6.1	0.0	287	
11부	50-63류	1,302	9.5	18.4	1,296	5
12부	64-67류	100	10.1	13.0	100	
13부	68-70류	343	7.8	13.5	290	
14부	71류	118	5.2	8.2	118	
15부	72-83류	1,035	6.9	7.2	1,030	
16부	84-85류	2,044	7.8	8.6	1714	
17부	86-89류	333	6.3	8.1	251	
18부	90-92류	586	7.9	9.2	554	
19부	93류	81	3.4	5.9	81	
20부	94-96류	277	8.0	9.2	272	
21부	97류	15	0.0	0.0	15	
전체	97	12,232	9.2	11.5	10,735	272

자료 : 관세청.

가 큰 것으로 파악됨.

- 2부 식물성 생산품의 경우 단순평균관세율은 2011년 18.7%에서 2012년 25.0%로 증가했지만 가중평균관세율은 23.9%에서

18.9%로 감소, 반면 4부 음식료 등의 경우 2012년 가중평균관세율(19.6%)이 단순평균관세율(13.8%)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됨.

〈표 4-7〉 2012년 대중국 수입규모 및 실질관세율(부·류별)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코드수 (HSC10)	대중국 수입규모 (백만 달러)	대중국 관세율 (가중평균, %)	대중국 실질관세율 (단순평균, %)
1부	01-05류	760	1,023	16.8	13.2
2부	06-14류	676	1,148	18.9	25.0
3부	15류	108	19	8.0	12.7
4부	16-24류	539	1,214	19.6	13.8
5부	25-27류	392	1,828	3.6	1.7
6부	28-38류	2,298	6,140	5.6	4.9
7부	39-40류	381	2,120	6.3	6.0
8부	41-43류	242	907	6.8	6.3
9부	44-46류	314	612	5.0	6.4
10부	47-49류	288	458	0.0	0.0
11부	50-63류	1,302	5,479	9.0	9.6
12부	64-67류	100	1,277	9.2	10.1
13부	68-70류	343	2,514	7.4	7.8
14부	71류	118	161	4.9	4.4
15부	72-83류	1,035	13,383	3.9	1.5
16부	84-85류	2,044	33,555	5.5	3.1
17부	86-89류	333	2,555	5.1	4.0
18부	90-92류	586	4,183	6.4	5.3
19부	93류	81	1	3.4	3.1
20부	94-96류	277	2,184	5.2	4.3
21부	97류	15	6	0.0	0.0
전체	97	12,232	80,768	7.8	4.6

자료 : 관세청.

- 5부(광물성 생산품)의 경우도 2012년 가중평균관세율(3.6%)이 단순평균관세율(1.7%)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

2. 중국의 관세 현황

○ 중국의 품목분류는 8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관세율 책정 및 교역대상 품목의 실질적 관리 및 통계수집, 작성을 위해 10단위로 세분화된 관세율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으며, 10단위로 세분화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중국 산업정책과 관세정책의 일관된 시행과 중국 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세율을 제정해야 하는 상품의 경우
- 중국이 제한하는 수출입 품목(허가증 필요 품목, 배분 관리 품목 등)이 8단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 대외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수출입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부문에 대해 중점적인 감독이 필요한 경우
- 수출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경우, 중국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수출잠재력이 있는 신기술 제품의 경우

○ 중국은 특정목적에 따라 HS 8단위와 10단위를 혼용함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8단위에 대한 관세율 자료가 누락된 경우도 다수 존재함.

- 8단위에서 누락된 세율의 경우 10단위 자료를 기준으로 관세율 자료를 산출하였음.
  : 특정 8단위 아래 모든 10단위 품목의 관세율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관세율을 8단위의 관세율로 적용함.
  : 특정 8단위 아래 10단위 품목들의 세율이 상이하게 배정되어 있는 경우 코드 수에 비례하여 해당 8단위의 세율을 산출하였음.

○ 국가별 관세율은 최혜국세율(MFN)과 양자 또는 다자간(FTA) 협정세율을 동시에 고려하였음.

- 한국의 세율=min(최혜국세율, 아·태 협정세율), 싱가포르의 세율=min(최혜국세율, 중·ASEAN 협정세율, 중·싱가포르 협정세율, 중·싱가포르 FTA 협정세율)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함.
  : 아태무역협정 세율 적용국가는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이며, ASEAN 협정세율 적용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 한국의 가중평균 관세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관세율은 코드 수에 비례하여(단순평균) 계산하였으며, 한국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해당 연도 중국 해관통계(8단위별)의 수입규모를 가중치로 하여 산출하였음.

○ 2010년 중국의 대한국 수입 관련 관세율은 전체 품목에 대한 최혜국세율의 경우 평균 9.1%이며 관련 코드는 7,935개임.

- 농축수산물 관련(1~4부) 품목들의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섬유류(11~12부) 및 시멘트, 도자기, 유리(13부), 차량 및 운송기기(17부), 무기(19부) 등에도 높은 수준의 관세

〈표 4-8〉 2010년 대한국 수입규모 및 실질관세율(부·류별)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코드수 (HSC8)	MFN 최혜국세율	대한국 수입규모 (백만 달러)	대한국 관세율 (가중평균, %)	대한국 실질관세율 (단순평균, %)
1부	01-05류	377	12.2	158	8.2	11.1
2부	06-14류	468	11.4	41	16.8	9.7
3부	15류	54	12.7	5	10.0	12.4
4부	16-24류	287	16.8	214	9.1	16.2
5부	25-27류	200	3.2	7,994	4.5	3.1
6부	28-38류	1,235	6.0	12,150	4.2	5.7
7부	39-40류	269	9.0	11,899	5.9	8.6
8부	41-43류	107	12.1	447	6.5	11.2
9부	44-46류	204	4.4	6	2.6	4.4
10부	47-49류	161	5.2	536	5.6	5.2
11부	50-63류	1,141	11.1	2,633	8.3	10.0
12부	64-67류	68	17.9	85	13.3	14.6
13부	68-70류	186	12.4	333	9.7	12.2
14부	71류	86	9.5	73	2.8	8.6
15부	72-83류	744	7.0	9,633	4.9	6.8
16부	84-85류	1,462	7.6	63,762	1.4	7.1
17부	86-89류	349	13.1	4,109	14.3	12.5
18부	90-92류	322	9.5	23,096	4.3	9.4
19부	93류	21	13.0	0	13.0	13.0
20부	94-96류	178	10.8	776	15.3	10.6
21부	97류	9	9.6	0	12.1	9.6
22부	98류	7	0.0	-	0.0	0.0
전 체	98	7,935	9.1	137,950	3.6	8.5

자료 :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연호.

가 부과됨.

- 2부 식물성 생산품의 경우 가중평균관세가 단순평균관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2부를 제외한 1, 3, 4부의 경우 가중평균관세는 실질관세(단순평균관세)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포함하고 있는 17부의 단순평균관세율은 12.5%이며 가중평균관세율은 14.3%로 실제 중국으로 수입되는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 20부 가구, 완구 등에 포함된 품목들의 경우도 단순평균관세율은 10.6% 수준이지만 가중평균관세율은 15.3%로 실질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됨.

○ 2011년 중국의 대한국 수입관세의 경우 단순평균관세율은 2010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됨. 하지만 가중평균관세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전체 품목에서 2010년 3.6%에서 2011년 4.6%로 증가하였음.

- 농축수산물 관련 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2~4부의 가중평균관세율의 상승이 두드러짐. 2부 식물성 생산물은 2010년 16.8%에서 2011년 20.2%로, 3부 동물성 유지는 동 기간 10.0%에서 15.1%로, 4부 음식료는 9.1%에서 25.0%로 증가하여 실제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들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파악됨.
- 12부(섬유 관련 품목), 13부(시멘트, 유리 등), 17부(자동차

〈표 4-9〉 2011년 대한국 수입규모 및 실질관세율(부·류별)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코드수 (HSC8)	MFN 최혜국세율	대한국 수입규모 (백만달러)	대한국 관세율 (가중평균, %)	대한국 실질관세율 (단순평균, %)
1부	01-05류	378	12.3	226	8.5	11.1
2부	06-14류	467	13.1	65	20.2	11.5
3부	15류	54	13.1	11	15.1	12.7
4부	16-24류	287	17.6	286	25.0	17.0
5부	25-27류	200	3.7	12,205	6.9	3.6
6부	28-38류	1,257	6.5	15,389	4.3	6.1
7부	39-40류	270	9.4	11,964	6.5	9.0
8부	41-43류	106	12.3	472	7.2	11.3
9부	44-46류	206	4.4	6	2.4	4.4
10부	47-49류	163	5.3	458	5.7	5.3
11부	50-63류	1,140	11.3	2,599	8.4	10.2
12부	64-67류	68	17.9	88	13.8	14.6
13부	68-70류	187	13.5	397	11.7	13.2
14부	71류	86	10.6	83	2.8	9.7
15부	72-83류	744	7.3	9,436	5.0	7.1
16부	84-85류	1,473	8.4	65,966	2.3	7.8
17부	86-89류	349	13.2	4,741	15.3	12.5
18부	90-92류	329	10.0	23,310	5.5	9.8
19부	93류	21	13.0	0	13.0	13.0
20부	94-96류	180	11.7	420	4.4	11.4
21부	97류	9	9.6	0	12.0	9.6
22부	98류	7	0.0	-	0.0	0.0
전 체	98	7,981	9.6	148,123	4.6	9.0

자료 :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연호.

운송기기 등) 등의 품목들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어 있으며 가중평균관세의 경우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4-10〉 2012년 대한국 수입규모 및 실질관세율(부·류별)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코드수 (HSC8)	MFN 최혜국세율	대한국 수입규모 (백만 달러)	대한국 관세율 (가중평균, %)	대한국 실질관세율 (단순평균, %)
1부	01-05류	488	11.4	161	8.5	10.3
2부	06-14류	510	12.9	73	18.0	11.3
3부	15류	56	12.6	7	10.6	12.3
4부	16-24류	306	17.1	372	22.8	16.3
5부	25-27류	205	2.9	11,793	1.6	2.8
6부	28-38류	1,279	5.9	17,363	3.7	5.6
7부	39-40류	271	8.9	13,018	5.9	8.4
8부	41-43류	106	12.1	518	6.5	11.4
9부	44-46류	207	4.4	10	3.8	4.4
10부	47-49류	160	5.1	492	5.1	5.1
11부	50-63류	1,141	11.2	2,646	8.8	10.3
12부	64-67류	69	18.0	82	13.6	14.6
13부	68-70류	191	12.4	462	9.7	12.2
14부	71류	87	9.5	100	1.9	8.5
15부	72-83류	756	7.0	9,996	4.6	6.8
16부	84-85류	1,485	7.6	79,514	1.3	7.1
17부	86-89류	349	13.0	4,658	13.8	12.5
18부	90-92류	331	9.2	24,393	4.5	9.1
19부	93류	20	13.0	0	13.0	13.0
20부	94-96류	184	10.8	542	5.1	10.6
21부	97류	9	7.6	-	7.6	7.6
22부	98류	7	0.0	-	0.0	0.0
전 체	98	8,217	9.2	166,199	3.2	8.6

자료 :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연호.

○ 2012년 중국이 대한국 수입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은 2011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단순평균관세율의 경우 9.0%에서 8.6%로, 가중평균관세율의 경우 4.6%에서 3.2%로 하락하였음.

〈표 4-11〉 중국의 FTA 체결 및 협상 현황

단계	대상국 및 경제권	발효 및 협상 시기
발효	홍콩·마카오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2004
	아세안	2004 EHP (초기관세인하프로그램) 2005 상품, 2007 서비스, 2009 투자
	칠레	2006 상품, 2010 서비스, 투자
	파키스탄	2006 상품, 2007 서비스, 2009 투자
	뉴질랜드	2008
	싱가포르	2009
	페루	2010
	대만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2010
	코스타리카	2011
협상 중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남아공 등 5개국	2004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의 6개국	2005
	호주	2005
	노르웨이	2008
	아이슬란드	2007
	스위스	2011
	한국	2012
검토 중	인도	
	한·중·일	

자료 : 김영무, "한국의 통상정책과 한·중 FTA", 한·중 무역포럼(201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Vol. 10, No 23(2010.7).

- 농수축산물 관련 품목(1~4부)의 관세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섬유류(12~13부), 자동차 및 운송기기(17부) 등의 수입관세율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

○ 중국은 2012년까지 총 10건의 FTA(18개 국가)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7건의 FTA(16개국)를 협상 중이고, 중국·인도, 한·중·일 3국 간 FTA에 대해 타당성을 연구 중임.

○ 2010년 중국이 주요 무역대상국 및 FTA 체결국과의 교역에 부과하는 평균관세율은 비교대상국들 중 한국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 부과되어 있으며 2004년 무역협정을 맺은 홍콩·마카오에 부과된 관세율의 수준이 비교적 높음.

- 전체 평균관세율은 한국 8.5%, 마카오 7.1%, 홍콩 6.8% 수준이며 최혜국 관세율의 전체 평균인 9.1%보다 소폭 낮은 수준임.

○ 2010년 중국·대만 FTA 체결로 2011년 중국의 관세 자료에 대만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평균관세율 기준으로 대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 부과됨.

- 2011년 한국의 전체 평균관세율은 9.0%로 대만의 9.3%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7.4%, 7.6%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

○ 2011년 전체 평균관세율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관세율이 0.7%로 가장 낮으며, 칠레(1.3%), 뉴질랜드(2.3%), 아세안(2.9%)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 부과됨.

- 주요 국가별 중국의 관세율 차이를 보면 경제 및 산업 구조에

〈표 4-12〉 2010년 부·류별 중국의 주요 관세율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MFN 최혜국 세율	아세안	한국	칠레	파키스탄
1부	01-05류	12.2	0.0	11.1	2.5	9.7
2부	06-14류	11.4	2.3	9.7	1.7	7.2
3부	15류	12.7	2.0	12.4	4.9	12.4
4부	16-24류	16.8	5.4	16.2	4.5	14.6
5부	25-27류	3.2	5.3	3.1	0.5	1.1
6부	28-38류	6.0	13.1	5.7	0.9	3.5
7부	39-40류	9.0	11.5	8.6	1.6	7.0
8부	41-43류	12.1	0.0	11.2	0.8	8.7
9부	44-46류	4.4	2.9	4.4	2.2	3.3
10부	47-49류	5.2	4.9	5.2	5.0	5.1
11부	50-63류	11.1	1.8	10.0	0.0	4.7
12부	64-67류	17.9	0.2	14.6	0.6	13.5
13부	68-70류	12.4	0.1	12.2	1.7	9.0
14부	71류	9.5	0.8	8.6	1.9	7.9
15부	72-83류	7.0	0.0	6.8	1.1	4.4
16부	84-85류	7.6	0.5	7.1	1.5	5.5
17부	86-89류	13.1	4.8	12.5	0.5	10.7
18부	90-92류	9.5	0.0	9.4	1.0	7.5
19부	93류	13.0	0.0	13.0	0.9	8.7
20부	94-96류	10.8	0.2	10.6	2.1	8.8
21부	97류	9.6	0.0	9.6	1.4	7.1
22부	98류	0.0	0.0	0.0	0.0	0.0
전 체	98	9.1	3.7	8.5	1.3	6.1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1부	01-05류	0.0	5.2	9.4	11.2
2부	06-14류	0.2	4.6	10.7	9.1
3부	15류	1.8	7.2	11.4	4.0
4부	16-24류	1.3	6.6	10.5	6.6
5부	25-27류	0.2	0.6	3.0	3.1

〈계속〉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6부	28-38류	0.2	2.2	5.0	4.8
7부	39-40류	0.2	3.9	6.2	7.7
8부	41-43류	0.0	4.8	6.1	9.8
9부	44-46류	2.2	2.4	4.4	4.1
10부	47-49류	4.9	5.0	3.5	4.4
11부	50-63류	0.1	4.1	5.1	6.5
12부	64-67류	0.0	8.2	17.5	12.4
13부	68-70류	0.0	5.8	11.9	10.5
14부	71류	0.0	3.8	2.6	2.7
15부	72-83류	0.0	2.5	5.9	6.9
16부	84-85류	0.3	3.1	6.2	6.7
17부	86-89류	4.4	5.3	13.0	12.8
18부	90-92류	0.0	3.8	6.9	8.5
19부	93류	0.0	5.2	13.0	13.0
20부	94-96류	0.2	5.3	8.7	8.5
21부	97류	0.0	3.8	7.1	7.1
22부	98류	0.0	0.0	0.0	0.0
전 체	98	0.5	3.7	6.8	7.1

자료 :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연호.

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대만 등에 부과된 관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비교적 보완관계에 있거나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에 대한 관세율이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 FTA를 통한 시장개방과 관세부과를 통한 자국 산업보호 및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 무역정책에 대한 파악이 가능함.

○ 2012년 중국의 주요 관세율은 2010~2011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과 대만에 부과된 관세율이 가장 높으며, 마카오, 홍

〈표 4-13〉 2011년 부·류별 중국의 주요 관세율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MFN 최혜국 세율	아세안	한국	칠레	파키스탄
1부	01-05류	12.3	2.6	11.1	2.0	9.2
2부	06-14류	13.1	1.8	11.5	3.0	8.7
3부	15류	13.1	2.1	12.7	4.6	12.7
4부	16-24류	17.6	2.6	17.0	4.3	15.1
5부	25-27류	3.7	0.3	3.6	0.5	1.2
6부	28-38류	6.5	10.7	6.1	0.8	3.5
7부	39-40류	9.4	0.6	9.0	1.3	6.9
8부	41-43류	12.3	0.0	11.3	0.6	8.4
9부	44-46류	4.4	2.9	4.4	2.2	3.2
10부	47-49류	5.3	5.0	5.3	5.1	5.2
11부	50-63류	11.3	0.3	10.2	0.2	4.5
12부	64-67류	17.9	0.2	14.6	0.5	13.1
13부	68-70류	13.5	0.1	13.2	1.3	9.2
14부	71류	10.6	0.8	9.7	1.5	8.9
15부	72-83류	7.3	0.1	7.1	1.0	4.3
16부	84-85류	8.4	2.0	7.8	1.2	5.5
17부	86-89류	13.2	4.8	12.5	0.4	10.4
18부	90-92류	10.0	0.0	9.8	0.8	7.4
19부	93류	13.0	0.0	13.0	0.7	7.7
20부	94-96류	11.7	0.2	11.4	1.7	9.3
21부	97류	9.6	0.0	9.6	1.2	6.5
22부	98류	0.0	0.0	0.0	0.0	0.0
전 체	98	9.6	2.9	9.0	1.3	6.2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싱가포르	뉴질랜드	페루	홍콩	마카오	대만
1부	01-05류	0.0	2.9	7.9	9.9	11.5	11.9
2부	06-14류	1.8	4.2	8.9	12.8	11.0	13.0
3부	15류	1.8	5.4	9.8	11.6	4.0	13.1
4부	16-24류	2.0	4.6	13.6	11.2	7.4	17.6
5부	25-27류	0.2	0.3	0.3	3.4	3.6	3.7

〈계속〉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싱가포르	뉴질랜드	페루	홍콩	마카오	대만
6부	28-38류	0.3	1.3	1.2	5.4	5.2	6.2
7부	39-40류	0.4	2.0	3.6	6.6	8.2	8.8
8부	41-43류	0.0	2.5	7.4	6.3	10.0	12.0
9부	44-46류	2.2	1.9	2.1	4.4	4.1	4.4
10부	47-49류	5.0	5.0	5.0	3.4	4.5	5.3
11부	50-63류	0.3	2.3	5.2	5.3	6.7	10.7
12부	64-67류	0.0	4.9	12.1	17.5	12.4	17.4
13부	68-70류	0.0	3.2	7.8	13.4	11.7	13.4
14부	71류	0.0	2.6	7.1	3.6	3.7	10.6
15부	72-83류	0.1	1.3	2.0	6.3	7.3	7.0
16부	84-85류	0.3	1.7	3.3	6.9	7.4	8.0
17부	86-89류	4.4	3.1	8.1	13.0	12.9	12.4
18부	90-92류	0.0	2.0	5.3	7.1	9.0	9.8
19부	93류	0.0	2.6	7.8	13.0	13.0	13.0
20부	94-96류	0.2	3.1	8.8	8.9	8.8	11.5
21부	97류	0.0	1.9	5.7	7.1	9.6	9.6
22부	98류	0.0	0.0	0.0	0.0	0.0	0.0
전 체	98	0.7	2.3	4.7	7.4	7.6	9.3

자료 :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연호.

〈표 4-14〉 2012년 부·류별 중국의 주요 관세율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MFN 최혜국 세율	아세안	한국	칠레	파키스탄
1부	01-05류	11.4	0.0	10.3	2.5	7.8
2부	06-14류	12.9	3.4	11.3	2.6	8.3
3부	15류	12.6	1.7	12.3	4.1	12.3
4부	16-24류	17.1	15.2	16.3	3.4	14.2
5부	25-27류	2.9	24.5	2.8	0.4	0.9
6부	28-38류	5.9	14.3	5.6	0.6	3.2
7부	39-40류	8.9	11.3	8.4	1.0	6.1

〈계속〉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MFN 최혜국 세율	아세안	한국	칠레	파키스탄
8부	41-43류	12.1	0.0	11.4	0.6	8.2
9부	44-46류	4.4	2.2	4.4	2.2	3.0
10부	47-49류	5.1	4.8	5.1	4.9	5.0
11부	50-63류	11.2	0.2	10.3	0.2	4.1
12부	64-67류	18.0	0.0	14.6	0.4	12.7
13부	68-70류	12.4	0.0	12.2	1.2	8.0
14부	71류	9.5	0.0	8.5	1.1	7.7
15부	72-83류	7.0	0.0	6.8	0.7	3.8
16부	84-85류	7.6	3.7	7.1	0.9	4.7
17부	86-89류	13.0	4.4	12.5	0.3	10.1
18부	90-92류	9.2	0.0	9.1	0.6	6.6
19부	93류	13.0	0.0	13.0	2.0	3.5
20부	94-96류	10.8	0.2	10.6	1.2	8.6
21부	97류	7.6	0.0	7.6	0.9	5.8
22부	98류	0.0	0.0	0.0	0.0	0.0
전 체	98	9.2	5.0	8.6	1.1	5.6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싱가포르	뉴질랜드	페루	홍콩	마카오	대만	코스타리카
1부	01-05류	0.0	0.5	6.3	7.7	10.4	10.3	6.1
2부	06-14류	1.5	2.0	7.5	12.0	10.6	12.5	7.7
3부	15류	1.7	3.4	8.7	10.8	3.8	12.6	7.5
4부	16-24류	2.1	1.9	12.2	10.5	7.2	16.9	10.7
5부	25-27류	0.1	0.0	0.2	2.6	2.7	2.6	0.1
6부	28-38류	0.2	0.1	0.8	4.9	4.7	5.5	0.5
7부	39-40류	0.2	0.1	3.1	6.2	7.7	7.4	1.8
8부	41-43류	0.0	0.3	7.4	6.1	9.7	11.6	7.2
9부	44-46류	2.2	1.5	2.1	4.4	4.0	4.4	2.0
10부	47-49류	4.8	4.8	4.8	3.3	4.3	5.1	4.8
11부	50-63류	0.2	0.2	5.3	5.2	6.6	10.0	4.5
12부	64-67류	0.0	1.7	5.9	17.6	12.2	17.3	9.1

〈계속〉

부 (Section: 대분류)	류 (Chapter: 중분류)	싱가포르	뉴질랜드	페루	홍콩	마카오	대만	코스타리카
13부	68-70류	0.0	0.6	6.4	11.9	10.2	12.1	6.3
14부	71류	0.0	0.9	5.7	2.6	2.7	9.5	5.0
15부	72-83류	0.0	0.1	1.7	5.9	6.9	6.3	1.5
16부	84-85류	0.3	0.2	2.8	6.2	6.7	6.7	2.3
17부	86-89류	4.4	1.0	8.0	12.9	12.8	11.6	5.4
18부	90-92류	0.0	0.2	4.7	6.7	8.2	9.1	3.9
19부	93류	0.0	0.0	5.2	13.0	13.0	13.0	7.8
20부	94-96류	0.2	0.9	7.6	8.4	8.4	10.3	6.9
21부	97류	0.0	0.0	3.7	5.1	5.1	7.6	4.8
22부	98류	0.0	0.0	0.0	0.0	0.0	0.0	0.0
전 체	98	0.6	0.6	4.2	6.8	7.2	8.5	3.7

자료 :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연호.

콩에 대한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

3. 한국과 중국의 산업별 관세율 비교

○ 최근 3년간 한·중 양국의 산업별 가중평균관세율을 비교해보면 디지털가전, 비금속광물제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에서 가중평균 관세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남.

- 또한 자동차, 철강, 조선,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서 한·중 간 관세 부과 수준의 격차가 큼.

○ 2010년 자동차, 철강, 비금속광물제품, 조선 관련 품목에 대해서 중국이 대한국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면

〈표 4-15〉 2010년 한·중 간 산업별 관세율 비교

	대중국 관세율					대한국 관세율			
	기본 세율	WTO	대중국 수입 규모 (백만 달러)	대중국 실질 관세율 (단순 평균, %)	가중 평균 관세율 (%)	MFN 최혜국 세율 (%)	대한국 수입 규모 (백만 달러)	대한국 실질 관세율 (단순 평균, %)	가중 평균 관세율 (%)
디지털가전	7.9	10.1	2,611	5.7	4.1	12.7	2,049	11.7	5.3
반도체디스플레이	7.8	3.3	7,504	3.0	0.4	3.5	29,409	3.5	0.0
비금속광물제품	7.7	13.4	1,080	7.3	7.7	11.6	114	11.5	10.7
비철금속	5.9	9.1	1,413	5.6	5.0	5.9	3,680	5.8	3.4
생활용품	7.5	8.6	4,735	5.2	6.1	11.0	2,985	10.4	7.0
석유화학	7.2	6.3	1,193	5.6	4.8	5.9	15,601	5.8	4.5
섬유	10.0	19.2	4,936	9.4	9.8	11.4	2,632	10.2	8.3
의료기기	8.0	6.2	109	6.0	7.4	4.3	124	4.0	4.5
의약품	6.9	2.1	195	5.7	6.6	4.9	104	4.1	4.1
일반기계	7.9	11.2	3,355	6.5	6.4	8.3	9,226	7.8	5.8
자동차	8.6	11.6	1,257	7.1	6.3	13.9	4,272	13.2	14.0
전기전자	7.7	6.3	10,017	4.6	1.6	5.9	17,079	5.6	1.6
정밀화학	7.6	6.3	4,577	5.7	5.4	6.3	8,529	5.9	5.8
조선	4.8	6.5	1,502	4.0	0.7	7.3	1,654	7.3	3.0
중전기기	7.9	8.9	5,022	5.9	6.0	6.9	3,464	6.4	4.1
철강	7.0	2.9	9,473	1.6	0.9	6.4	5,262	6.2	5.6
통신기기	8.0	3.1	3,276	2.1	0.5	0.8	3,790	0.7	0.1
항공	2.6	2.5	8	2.1	3.2	1.8	10	1.7	1.0
기타	13.5	20.1	6,399	13.4	10.1	10.6	663	9.8	6.8
기타 제조업	7.1	8.8	2,900	5.5	4.2	10.4	27,304	10.1	4.2
전 체	9.0	11.4	71,561	7.5	4.2	9.1	137,950	8.5	3.6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연호 자료를 근거로 산업별 관세율 산정.

항공, 의료기기, 의약품, 비철금속 등에 대해서는 한국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였음.

- 중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자동차 14%, 철강 5.6%, 비금속광물제품 10.7%, 조선 3% 등이며, 양국 간 관세율 격차는 자동차

〈표 4-16〉 2011년 한·중 간 산업별 관세율 비교

	대중국 관세율					대한국 관세율			
	기본 세율	WTO	대중국 수입 규모 (백만 달러)	대중국 실질 관세율 (단순 평균, %)	가중 평균 관세율 (%)	MFN 최혜국 세율 (%)	대한국 수입 규모 (백만 달러)	대한국 실질 관세율 (단순 평균, %)	가중 평균 관세율 (%)
디지털가전	7.9	10.1	2,932	6.0	4.4	15.3	2,292	14.2	22.9
반도체디스플레이	7.7	3.5	7,402	3.3	0.2	3.8	30,076	3.8	0.0
비금속광물제품	7.7	13.4	1,352	7.3	7.7	12.9	181	12.7	13.5
비철금속	5.8	9.1	2,135	5.5	4.9	6.2	3,601	6.1	4.0
생활용품	7.5	8.6	5,844	5.2	6.3	11.6	2,767	11.0	7.9
석유화학	7.2	6.3	1,975	5.6	4.2	6.1	17,877	6.0	4.8
섬유	10.0	19.2	5,980	9.5	9.8	11.4	2,599	10.2	8.4
의료기기	8.0	6.2	126	6.0	7.2	4.4	132	4.1	4.5
의약품	6.9	2.1	176	5.7	6.7	5.0	81	4.2	4.4
일반기계	7.9	11.2	4,509	6.5	6.3	8.8	10,729	8.2	6.5
자동차	8.6	11.6	1,565	7.2	6.8	14.0	5,006	13.3	14.9
전기전자	7.7	6.3	10,208	4.6	1.8	6.3	16,342	5.9	2.1
정밀화학	7.6	6.3	5,943	5.7	5.3	6.8	10,002	6.3	6.0
조선	4.8	6.5	931	4.0	0.3	7.3	1,462	7.3	2.6
중전기기	7.9	8.9	6,827	6.0	6.6	7.2	3,382	6.7	4.2
철강	7.0	2.9	12,311	1.6	0.7	6.5	5,256	6.4	5.4
통신기기	8.0	3.1	5,294	2.1	0.4	0.7	4,714	0.7	0.1
항공	2.6	2.5	5	2.1	0.8	1.9	14	1.8	1.0
기타	13.5	20.1	7,206	13.4	10.3	11.5	976	10.6	11.7
기타 제조업	7.1	8.8	3,705	5.4	4.2	10.8	30,636	10.4	5.8
전 체	9.0	11.4	86,426	7.5	4.4	9.6	148,123	9.0	4.6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연호 자료를 근거로 산업별 관세율 산정.

7.7%포인트, 철강 4.7%포인트, 비금속광물제품 3.0%포인트, 조선 4.3%포인트 수준으로 나타남.

-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은 부과하고 있는 산업은 항공 3.2%, 의료기기 7.4%, 의약품 6.6%, 비철금속 5% 등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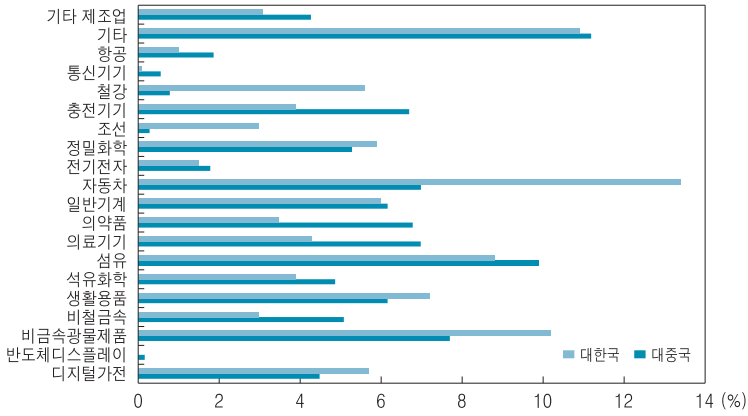
관세율 격차는 항공 2.2%포인트, 의료기기 2.9%포인트, 의약품 2.5%포인트, 비철금속 1.6%포인트 수준임.

○ 2011년 디지털가전, 비금속광물제품, 자동차, 철강 등에서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디지털가전의 경우 2010년 양국 간 관세율 격차는 1.2%포인트 수준에서 2011년 18.5%포인트로 급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관세 품목들의 대중국 수출과 규모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파악됨.
- 섬유, 의료기기, 의약품, 중전기기 등에 대해서는 한국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함.

○ 2012년 한·중 양국 간 가중평균관세율 수준 및 격차는 2010년 수준에서 유지됨.

〈그림 4-1〉 2012년 한·중 간 산업별 관세율(가중평균) 비교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연호 자료를 근거로 산업별 관세율 산정.

- 자동차, 철강, 조선, 비금속광물제품 관련 품목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이 높은 반면, 의료기기, 의약품, 섬유, 중전기기 관련 품목에 대해 한국이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최근 3년간 중국은 자동차, 철강, 조선, 디지털가전 등 한국이

〈표 4-17〉 2012년 한·중 간 산업별 관세율 비교

	대중국 관세율					대한국 관세율			
	기본 세율	WTO	대중국 수입 규모 (백만 달러)	대중국 실질 관세율 (단순 평균, %)	가중 평균 관세율 (%)	MFN 최혜국 세율 (%)	대한국 수입 규모 (백만 달러)	대한국 실질 관세율 (단순 평균, %)	가중 평균 관세율 (%)
디지털가전	7.9	10.0	2,987	6.0	4.5	13.3	2,778	11.8	5.7
반도체디스플레이	7.7	3.5	6,566	3.3	0.2	3.5	38,036	3.5	0.0
비금속광물제품	7.7	13.4	1,619	7.3	7.7	11.6	241	11.4	10.2
비철금속	5.8	9.1	1,549	5.5	5.1	5.8	4,172	5.7	3.0
생활용품	7.4	8.6	5,832	5.2	6.2	10.9	3,239	10.4	7.2
석유화학	7.2	6.3	1,683	5.6	4.9	5.9	20,569	5.6	3.9
섬유	9.9	19.2	5,303	9.4	9.9	11.3	2,646	10.4	8.8
의료기기	8.0	6.2	148	6.0	7.0	4.2	219	4.0	4.3
의약품	6.8	2.2	165	5.6	6.8	4.8	123	3.9	3.5
일반기계	7.9	11.2	4,915	6.5	6.2	8.2	10,630	7.8	6.0
자동차	8.6	11.6	1,463	7.2	7.0	13.9	4,949	13.3	13.4
전기전자	7.7	6.3	9,886	4.6	1.8	5.8	17,902	5.6	1.5
정밀화학	7.6	6.3	5,783	5.7	5.3	6.2	10,273	5.8	5.9
조선	4.8	6.5	1,112	4.0	0.3	7.2	1,310	7.2	3.0
중전기기	7.9	8.9	7,506	6.0	6.7	7.0	3,733	6.5	3.9
철강	7.0	2.8	11,210	1.6	0.8	6.4	5,083	6.2	5.6
통신기기	8.0	3.1	3,417	2.1	0.6	0.7	8,505	0.6	0.1
항공	2.6	2.5	8	2.1	1.9	1.8	16	1.7	1.0
기타	13.9	20.4	6,257	13.9	11.2	11.1	1,072	10.2	10.9
기타 제조업	7.0	9.0	3,359	5.4	4.3	10.3	30,704	9.9	3.1
전 체	9.2	11.5	80,768	7.8	4.6	9.2	166,199	8.6	3.2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연호 자료를 근거로 산업별 관세율 산정.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들에 대해 높고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 지속이 필요

○ 섬유, 석유화학, 비철금속, 중전기기 등에 한국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단순임가공 무역 또는 조립가공 무역 등의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역수입에 대한 관세부과 및 해당 산업에 대한 국내 산업기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판단됨.

제5장
결 론

○ 국가 간 무역 관련 제반활동의 편리성과 합리성을 위해 중요한 무역품목분류는 관세분류에서 발전한 HS분류로 표준화됨.

- UNSD의 무역통계는 SITC분류에 입각하여 작성해오면서 WCO의 관세 중심 분류인 CCCN와 양대 무역분류체계를 형성해 왔으나, HS분류의 현실적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1997년부터는 HS분류로 통일함.

○ HS분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국제 무역환경의 반영을 위해 지속적인 품목개정이 이루어지므로 무역통계, 관세 등의 시계열적 연계나 국가 간 비교 등을 위해서는 개정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됨.

- 품목별 무역통계나 관세의 시계열적 연계 또는 비교를 위해서 WCO는 개편 시 신·구 기준을 연결할 수 있는 대응표를 제공하지만 일대일이나 다대일의 대응관계로 개편된 경우에만 시계열자료 구성이 가능함.

- 일대다 또는 다대다 유형의 경우 근사적 연계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기존과 신규의 기간격차가 크고, 개편의 폭이 클 경우 장기 시계열 자료의 구성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HS 구성 또는 개편과 관련된 정확한 이해 없이 작성된 장기 시계열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석결과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요구하는 분석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 HS분류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 내 산업의 보호 및 발전과 수출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규제 및 지원을 위해 6단위 이상에서 품목코드를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게 세분화하여 이용하고 있음.

- 품목군별로 HS 세분화 정도 비교를 통해 각국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무역정책 운영의 의도파악이 가능함.

- HS 세분화를 통해 수·출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근거로 자국 내 산업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 전략 수립이 가능함.

○ 한·중 간 FTA 협상이나 중국시장 진출 등의 향후 무역 관련 활동에서 중국 HS분류의 개정이나 세분화 정도 등은 필수적인 정보임과 동시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

- 중국은 섬유, 자동차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 세분화된 HS분류를 시행하고 있음.

- 또한 가공무역이 활발한 품목들에 대해서도 HS를 세분화하여 금지정책의 확대와 자국산업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중국의 산업군별 HS 세분화 정도에 대한 정보와 이해는 중국시장 진출을 고려하거나 중국을 생산기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대중국 전략 중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 한편, 한·중 간 관세율은 중국의 경우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들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제품이나 생산 원료 등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중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철강, 조선, 정밀화학, 자동차, 디지털 가전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섬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임.

○ 중국의 관세정책을 이용한 자국산업의 보호 전략은 한중FTA 협상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전략 마련이 필요함.

- 중국시장에서 주요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산업별 발전 및 중국시장에의 진출전략을 고려한 한중FTA 협상전략이 요구됨.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2), "200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개정".
· _____(2008),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편 추진".
· _____(2011),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류체계(HSK) 개편".
· _____(2012), "수출입에 사용되는 관세율표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 김무영(2012), "한국의 통상정책과 한·중 FTA", 한·중 무역포럼.
· 김창길 외(2010), "관세청분류코드(HSKCS)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범위 확대와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관세청(2010), "관세청고시 제2010-120호 :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 무역협회 해외시장정보(2007.1), "2007년 중국의 달라지는 HS코드".
· _____(2012.2), "2012년 중국의 달라지는 HS코드".
· 오상훈(2011), "FTA시대에 對備한 HS 品目分類 紛爭 解決方案에 관한 硏究 : 한국의 HS 品目分類 紛爭 事例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6.
· 지만수 외(2010),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10, No 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국해관통계연감.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세칙.
· 野田容助 · 黒子正人編(2010), 「貿易指數の作成と応用 : 貿易構造の変化と國際比較」, 調査硏究報告書, 2009-II-03, アジア経濟硏究所.
· UN(2011),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 2010",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52.
· USAID, "CUSTOMS TARIFF NOMENCLATURE CLASSIFICATION".
· WCO(2012), "AMENDMENTS TO THE NOMENCLATURE APPENDED AS AN ANNEX TO THE CONVENTION".

· _____(2012), "TABLE I, II. CORRELATING THE 2012 VERSION TO THE 2007 VERSION OF THE HARMONIZED SYSTEM".
· _____(2012), "WCO 2012 HS Change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William R. Leonard(1953),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ed. R. G. D. Allen and J. Edward Ely, New York: Wiley.

정책자료 2013-180
한중FTA 협상준비를 위한 HS코드의 연계 및 관세율 DB 구축

인쇄일 2013년 7월 10일
발행일 2013년 7월 12일
발행인 김도훈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6-0001호
주 소 130-7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전 화 02-3299-3114
팩 스 02-963-8540
문 의 자료·편집팀 02-3299-3151
인쇄처 평강기획인쇄

값 6,000원
ISBN 978-89-5992-539-1 93320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역재를 금합니다.